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332

발의연월일 : 2026. 4. 14.

발 의 자 : 이성권·백종헌·김도읍
김미애·박성훈·정점식
신성범·김태호·윤영석
김종양·박상웅·윤한홍
서천호·최형두·서일준
이종욱·조승환·김희정
서지영·정연욱·조경태
정동만·김대식·정성국
이헌승·박수영·곽규택
주진우 의원(28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해 인구, 산업, 인프라, 권한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고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지방 소멸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개편과 기능 혁신을 통한 과감한 국가 구조 재설계와 통합된 광역자

치단체로의 권한이양은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을 재건할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자 동일한 생활권·산업경제권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구역의 이원화로 인해 정책 집행의 중복과 행정 비효율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종전의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경제·산업수도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동남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통합한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경제·산업수도로의 도약을 도모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분권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상남도·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청사는 종전의 경상남도 청사와 부산광역시 청사를 활용(안 제7조).

다. 자치권 확보

1)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의 제정 범위 확대하는 자치입법권 강화(안 제14조).

2) 국무총리 소속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발전 방안, 행정·재정 자율권 강화 등을 심의하며 실무위원회 운영 근거를 둠(안 제18조).

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계획을 수립, 경제·산업수도로의 도약을 위하여 규제자유화를 추진, 환경, 중소기업 및 고용·노동, 보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을 우선적으로 이양함(안 제21조~제27조).

4)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의정지원체계·예산독립성 강화(안 제30조~제42조).

5) 행정기구·정원·인사 자율화, 통합특별시조례로 자율적 정원 관리, 인사행정 특례 및 공무원 처우보장(안 제45조~제58조).

6) 재정분권의 실현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지방 이양, 보통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신규 지방세 도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경남부산통합특별시 계정 설치, 지방채 발행 등 재정분권 실현으로 실질적인 재정 자립(안 제69조~제88조).

7)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10년 간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면제로 초광역 핵심사업 적기 추진 기반 마련(안 제85조, 제195조, 제197조, 제217조, 제234조, 제413조, 제423조, 제465조, 제484조, 제551

조, 제563조, 제602조, 제606조)

라. 경제·산업수도 조성

1) 경제·산업수도 육성 기본계획 수립, 개발사업의 시행, 인·허가 등의 의제, 제한적 토지수용,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세 및 개발부담금 감면 등으로 경제·산업수도 조성 기반 마련(안 제162조～제177조)

2) 경제자유구역·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관리권(수립·변경·인허가 등) 확보, 규제자유특구 지정 특례로 기업유치 기반 확보, 실험시설 설치 완화, 시험인증 특례, 규제샌드박스 활용, 수출허가 절차 특례 등 핵심전략산업 실증 및 인증환경 조성(안 제178조～제192조)

3)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등 건설추진단 및 육성지원단 설치, 발전기금의 지원으로 정부 차원 지원 의무화(안 제195조～제210조)

4) 국제물류진흥지역 우선 지정 및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신속 연계 지정으로 트라이포트 중심지 도약(안 제217조, 제218조)

5)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신공항관리위원회 설치, 가덕도신공항 운영법인의 지분 소유 및 인사 등에 관한 특례, 공항 운영 수익의 재투자 및 조세 감면,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지원, 부산항만공사의 이관 및 지방공사화, 항만 수익의 귀속 및 재정 자율성 등 공항 및 항만의 운영 자치권 강화(안 제219조～제230조)

6) 과학기술 혁신 전담기관 설치, 첨단전략산업 육성, 제조 인공지능 활성화 지원, 우주항공・방산・양자산업 육성, 자동차・조선・기계 산업 지원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 거점 구축 및 주력산업의 고도화 (안 제231조～제287조)

7) 국가산업단지 지정요청 특례, 첨단과학기술단지・국방특화클러스터 조성, 노후산업단지 이전에 대한 지원 등 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혁신 지원 (안 제288조～제303조)

8)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외국인 근로자 정주・고용・생활여건 개선, 금융특구 조성 및 금융특구지원센터 설치 등 글로벌 기업 유치 및 지원 강화 및 글로벌 금융 기반 조성 (안 제304조～제331조)

9)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권,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지정, 귀농어・귀촌 활성화, 수산 자원 관리 권한 이양,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 전통산업 진흥 및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안 제363조～제400조)

마. 시민의 삶의 질 제고

1) 저출생 대응 특별기금을 설치・운용, 지역돌봄특구 지정, 청년지원정책 및 청년발전기금・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 설치・운용,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및 소상공인 종합지원 특례 등 각종 사회보장과 지역경제・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행복 증진 (안 제401조～제430조)

2)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권,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등 정부 관리권 대폭 이양 및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 범위 조례 규정(안 제432조~제434조)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 특례, 도로사업 특례,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 특례, 광역철도 사업 특례,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 도시철도 사업 특례, 초광역 교통사업을 위한 재정 특례 (안 제458~제465조)

4) 지역특화산업·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특례, 기회발전특구·혁신도시의 지정 특례, 경남부산상생발전 기금·기구 설치,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배정 및 이전 특례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활성화(안 제487조~제507조)

5) 지역문화 진흥기반 조성, 가야문화예술 중심도시 조성 및 역사문화 특구 지정, 이스포츠 진흥, 국제관광특구 지정, 국제행사 유치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 등 문화·관광의 진흥(안 제508조~제545조)

6)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남해안 관련 각종 규제혁신(예타 면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각종 보호구역 내 건축 허용),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 개발부담금 면제 등 남해안권 발전사업 종합 관리·지원 (안 제546조~제559조)

7)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개발, 갯벌관리구

역 지정 및 해양생태계 보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등 자연생태 자원의 합리적 활용(안 제578조～제604조)

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합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의 의사를 최종 확인 후 법안 시행 명시(안 부칙 제1조)

법률 제 호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통합한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경제·산업수도로의 도약을 도모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분권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산업수도”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우주항공·해양물류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며, 첨단산업·연구개발·문화·관광·국제금융 및 외국인 투자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국가 경제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남부산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 및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경제·산업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운영 목표 및 그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및 지역 경제·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가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을 통합특별시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4항에 따른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에 더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통합특별시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및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규제 완화 및 조례 중심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하여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법령으로 위임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이 자치입법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⑦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운영 목표 달성도 및 자치권 확대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특별시의 책무) ① 통합특별시는 국가의 정책에 협력하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지역 정책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무총리와 성과목표에 관한 협약(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④ 성과목표의 이행 여부는 제4조제7항에 따른 국가의 종합평가에 반영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통합특별시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통합특별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경남부산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과 경남부산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통합특별시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

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편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운영

제1장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제7조(통합특별시의 설치) ①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종전의 경상남도 일원 및 부산광역시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포함하여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1.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부여되는 일반적 자치권
2. 특별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위임받은 재정·입법 권한
3. 국가로부터 이양받은 사무에 대한 독자적 처리권

③ 통합특별시의 청사는 종전의 경상남도 청사와 부산광역시 청사를 활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로 이전하거나 신축할 수 있다.

제8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구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의 시·군

·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과 같다.

② 통합특별시는 관할구역 내 광역생활권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의 절차와 기준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9조(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시·군·구의 경계변경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시·군·구와 생활권 간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계변경 조정 신청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계변경 조정 신청 시,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주민투표) ① 통합특별시장은 「주민투표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군·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관할 시·군·구의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등 통합특별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기 전에 통합특별시의회 및 관계 시·군·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주민투표의 실시구역, 주민투표에 부칠 사항, 주민투표 실시 시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특별시장의 요구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통합특별시장의 요구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통합특별시장의 요구 내용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계 시·군·구 간 이해관계의 조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사유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에 필요한 경비는 「주민투표법」 제8조와 제27조를 준용하여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기초지방자치단체, 인접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

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범위, 절차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를 준용한다.

제12조(국가사무 위임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국가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액. 다만,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전부를 통합특별시에 교부하여야 한다.
2. 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3. 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4. 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위임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서 통합특별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 관련 사전협의 의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2에도 불구하고 미리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법령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특별시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2. 통합특별시의 행정·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3.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 또는 이양에 관한 사항
4. 통합특별시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특별시의 자치권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법령안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입법예고문에 통합특별시장의 의견과 그 반영 여부를 함께 명시하여야 하며,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자치입법권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는 「지방자치법」 제

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통합특별시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의 자치사무

2. 법령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속하는 사무(기관위임사무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무

② 통합특별시가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는 자치사무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써 부담금 또는 수수료의 범위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통합특별시는 제3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주민의 부담이 과도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사한 성격의 다른 수수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는 제3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안의 시·군·구의 조례는 통합특별시의 조례나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⑦ 조례 제정 절차 등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제15조(조례 제정에 관한 특례) ① 정부는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권한에 맞는 지방정책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사항 및 각종 위임사항을 상위법령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규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정부(소관부처 포함한다)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정부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지방자치법」 제3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7조(통합특별시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시·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또는 광역시의회·도의회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경남부산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광역시의회·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또는 광역시·도의 조례·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 또는 시·도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통합특별시의 지방세 세목에 관하여는 종전의 경상남도와 그 관할 자치구 및 부산광역시와 그 관할 시·군에 적용되던 「지방세기본법」 제8조를 적용하고, 통합특별시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⑧ 다른 법령에서 소방본부·소방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통합특별시소방청·통합특별시소방청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⑨ 통합특별시의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자치구(이하 기장군을 포함한다)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보통세(「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

다) 세목을 재원으로 하고, 시·군은 종전의 경상남도 보통세 세목을 재원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령에서 광역시와 도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자치구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광역시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하고,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도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한다. 다만,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통합특별시장(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 광역시 또는 도에 적용되는 규정 중 하나를 통합특별시에 적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장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설치 및 권한이양 등

제1절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설치

제18조(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특별시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특별시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정 자율권 강화 및 통합특별시 관련 법령 개정·행정 조치 제안

3. 제4조제7항에 따른 성과 평가 활용

4.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제23조, 제70조, 제83조, 제85조, 제162조, 제193조, 제233조, 제289조, 제433조, 제491조에 관한 사항

7. 통합특별시의 행정 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개정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8. 통합특별시의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간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0. 이 법에서 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련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 또는 도시개발과 지방자치, 교육자치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대표

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회 심의 안건 검토 및 자문·조정 등 실질적 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지원위원회와 협의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통보 및 조치 의무) ① 지원위원회는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심의일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정기적으로 종합·공개할 수 있다.

제2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 자유화 추진

제20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통합특별시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기간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시급한 사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검토 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과정에서 이를 존중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 결과를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 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에 필수적인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와 시·군·구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단계별 이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권한 사무의 전수조사
2. 통합특별시 및 시·군·구로 이양할 사무의 조사·선정
3. 이양 사무의 확정 및 사후 관리
4.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항

③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합특별시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 관리 또는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통합특별시와 시·군·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와 시·군·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 및 시·군·구는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기술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원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요청과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규제 자유화 추진) ① 통합특별시장은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규제 자유화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완화 및 규제특례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제1조 및 제2조제1항의 경제·산업수도로의 도약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 정비에 관한 기본사항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 심사 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 개선 등 규제 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규제 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및 규제 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제24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 기준 등) ① 종전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던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이양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하여야 한다.

1. 해당 사무가 다음 각 목의 사무에 해당할 것
   가.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
   나. 지역경제 발전 또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
   다. 공공성·효율성 및 재정책임성 측면에서 지방 이양이 타당한 사무
2. 해당 사무의 이양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정을 고려할 것
   가. 통합특별시의 행정상·재정상 여건 및 능력
   나. 사무의 이양에 대한 통합특별시의 입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 중소기업 및 고용·노동, 보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은 우선적으로 통합특별

시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밖에 지역 발전 및 신산업 육성에 긴밀히 관련된 분야의 사무도 우선 이양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양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권한뿐 아니라 이에 필요한 재정·인력 등 지원 수단도 동시에 이양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양하려는 경우 이양 사무의 종류, 범위 및 이에 필요한 재정·인력 등 지원 수단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세부 기준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사무의 이양에 따른 조치 등) ① 제24조에 따라 사무가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이양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이관하는 등 통합특별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사무 이양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종전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는 제2항에 따라 전환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 이관에 따라 업무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특별시와 관련 업무 시스템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 이양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양 사무의 범위
2. 최근 3년간 소요 비용
3. 재정지원의 규모·방법 및 시기
4. 그 밖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이양 대상 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군·구의 장은 제24조에 따른 이양 대상 사무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통합특별시 또는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통합특별시 또는 시·군·구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사무가 통합특별시 또는 시·군·구로 이관된 경우에는 그 이관

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무의 수행이 불가피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대체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로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설치의 목적·업무범위·존속기간 및 성과평가계획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통합특별시의회 및 관할 시·군·구의회를 말한다.

제4절 광역생활권의 지정 및 운영

제28조(광역생활권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군·구(행정구는 제외한다)의 광역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구 규모·생활권 연계성·교통 및 산업적 상호의존성 등을 고려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권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광역생활권위원회에는 관계 시·

군·구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특별시장에게 광역생활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통·산업·주거·복지 등 광역생활권 발전을 위한 연계 계획(이하 "광역생활권 연계계획"이라 한다)을 함께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광역생활권 연계계획은 다른 법정계획의 수립·변경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제29조(광역생활권의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광역생활권 사무 처리를 위한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행정 수요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광역생활권역 내 도로망 구축 및 대중교통 행정에 관한 사무
2. 광역생활권역 내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 광역생활권역 내 환경 보전, 재난 대응, 복지·보건 등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각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 사무

③ 제2항의 사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배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규모와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국가가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액 또는 그 비율을 정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제3편 자치권의 강화

제1장 지방의회

제30조(통합특별시의회의 지위와 권한) 통합특별시에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인 통합특별시의회를 둔다.

제31조(통합특별시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통합특별시의회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

특별시 주민의 복리 및 지역 발전과 관련된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지역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감사 및 조사 절차, 대상 기관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및 조사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제33조(통합특별시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의회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전의 양 시·도 의회 의원수를 유지한다. 단, 2030년 선거시 의원정수는 제35조에 따른 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결한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4조(지방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의회와 시·군·구의회의 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통합특별시의회와 시·군·구의회의 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결한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의회의 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시·군·구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하나의 읍·면·동

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통합특별시의회의 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제35조(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① 통합특별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경남부산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종전 경상남도·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의사반영을 위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의회는 종전 경상남도·부산광역시 관할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외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제37조(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102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 사무기구에 관한 조직, 정원, 직무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의회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통합특별시의회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통합특별시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통합특별시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통합특별시의회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의회의 조례로 정한다.

제40조(의회 정책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의회에는 의원 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으며, 그 직제와 정원은 통합특별시의회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와 운용은 통합특별시의회의 조례로 정하되, 위원회의 소관 사무 범위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위원회에 인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의회의 조례로 정한다.

제41조(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

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소속 독립적인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에는 학계·시민단체·재정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의정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42조(의회 경비) ① 의회의 경비는 독립된 항목으로 통합특별시 예산에 계상한다.

② 의장은 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정한 예산안 제출기일 3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가 해당 예산요구서에 대한 의결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예산요구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반영 여부와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의회의 세출 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의장의 의견을 미리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액의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이를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송부가 있었을 때에는 그 감액 내용에 대

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송부한다. 통합특별시장은 해당 의견의 반영 여부 및 사유를 예산안 제출 시 의회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허가·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시민 모니터링) ① 시민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의회의 입법과정과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정책 입안, 결정 및 집행과정 등을 감시·견제하기 위하여 그 활동 전반에 관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제1항의 모니터링 활동을 위하여 시민모니터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모니터링 활동과 제2항의 시민모니터단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장 자치행정

제1절 자치조직

제45조(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지방자치

법」 제1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4명으로 하되, 차관급으로 한다. 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명, 사무분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2항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기획조정실장의 직급 및 임용과 절차
2. 부교육감의 정원 및 직급
3.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포함한다)의 정원 기준
5.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③ 통합특별시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6조(행정기구와 공무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 변화하고 확대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책임성을 전제로 행정기구 및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권한을 가진다.

② 통합특별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관리한다.

1.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에서 정하는 인건비 총액 한도의 기준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원관리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의 재정 여건, 행정 수요, 인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정한 정원관리 기준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47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 설치된 자문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고려하여 그 설치 요건·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48조(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① 「소방기본법」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직속기관으로 통합특별시소방청을 두며, 통합특별시소방청장의 직급은 소방정감으로 한다.

② 통합특별시소방청 차장은 2명을 둔다.

③ 「소방공무원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초광역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소방청장의 임명은 통합특별시장의 임명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소방학교장의 임명은 통합특별시장의 임명제청으로 통합특별시소방청장이 한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장의 임명제청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소방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역 소방본부장을 지휘·감독하고, 지역 소방본부장은 통합특별시소방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지역의 소방 업무를 총괄한다.

⑤ 통합특별시의 소방 업무 수행과 통합특별시소방청 및 지역 소방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절 인사행정

제49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①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교육공무원과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통합특별시는 이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폐지되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하며, 4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

운영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조례에 최소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경상남도 또는 부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통합특별시조례에 따라 인사 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통합특별시 인사행정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항·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제4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통합특별시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통합특별시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4.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과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5. 승진임용방법·승진임용순위·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6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 분야·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의 임용은 제외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

진 임용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4.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⑥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 후단에 따라 남은 파견 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 승진임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 예외의 적용 범위와 구체 기준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며, 정무직 인사제도와의 연계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⑦ 통합특별시장은 중앙정부와의 신고 및 협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관한 노력 규정을 통합특별시조례에 명문화하여야 한다.

제51조(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의회를 포함한다) 소속 국가공무원(통합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된다.

제52조(국가와 통합특별시 간 인사교류) ① 통합특별시장은 자치행정 수행 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교류 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 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의 통일적 운영과 통합특별시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류 인력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3조(직군·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2급부터 4급까지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5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군·직렬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직군·직렬을 통합하거나 신설하였을 때에는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

친 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에서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제54조(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는 「지방공무원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및 제23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6조(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임용요건과 그 절차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5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직위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

감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근무 기간 동안 근무 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 또는 통합특별시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 지역 인재의 정의 및 선발 기준
2. 수습 근무 기간 중 근무 평가 방식 및 정규 임용 기준
3. 심사 절차 및 평가 기준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운영 기준

제58조(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원거리 지역으로 부임하거나 청사 소재지 이전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비용, 이주 수당 등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람에 대한 실비 수준의 이사 비용, 한시적 이주 수당 및 주거 지원비 지급

2. 원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실비 수준의 생활 지원비 지급

③ 제2항 각 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항목은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제3절 일반행정

제59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통합특별시와 인접한 시·도 지역에서 통합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조정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한다.

제60조(초광역 협력사업 및 범부처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배제) ① 통합특별시의 설치로 인하여 관할구역 내 대학, 연구기관 또는 통합특별시가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사업, 범부처 사업, 공모사업 등에 참여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는 해당 사업의 선정, 평가 및 지원에 있어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과 비교하여 재정지원 규모, 참여 기회 및 제도적 지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1조(통합특별시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 ① 통합특별시는 자치분권의 실현과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른 사무배분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군·구에 이양하여야 한다.

1. 초광역적 도시계획, 광역교통체계 및 광역 인프라의 수립·조정
2.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초광역 경제권 계획 수립 및 집행
3. 대규모 재난 관리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의 효율적인 광역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시·군·구로 이양할 사무를 발굴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독립적인 경남부산 자치분권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와 시·군·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자치분권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사무이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이양 시행계획에는 이양 대상 사무, 예산 지원 규모, 인력 재배치 및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로 이양하기로 결정된 사무는 「지방자치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해당 사무를 통합특별시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통합특별시 소속 시·군·구의 사무로 규정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사무 이양으로 인하여 시·군·구에 과도한 재정적·인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양된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주민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시정명령 등 최소한의 사후 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양 제외 사무, 자치분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이양 시행계획 수립절차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62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통합특별시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준용하여 통합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의를 받은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63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특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국가 및 지자체가 행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제64조(특례 부여 및 지원) ① 통합특별시 내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특별시장과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특별시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군·구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5조(과태료) ① 이 법에 따른 통합특별시장의 처분 또는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절차에 관하여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4절 주민참여 확대

제66조(주민참여예산제도)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통합으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주민 제안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주민자치회 등 주민 기구에서 제안한 사업이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예산 편성 과정에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추천·추첨 등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참여 과정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주민참여예산의 배분 및 세부 운영 방식은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 과정과 결과 반영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67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명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지역개발, 자치권 확대, 주요 예산 편성 등 지역공동체의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방식·대상 사안 및 서명 요건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조례는 시·군·구별 인구 규모, 행정여건 등을 고려

하여 제1항에 따른 서명 요건과 청구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8조(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사무국 또는 전담 사무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구성, 인력 운영 및 사무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자치재정

제1절 국가재정 지원 및 배분

제69조(재정분권의 실현 및 세원 조정 목표)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재정 자립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출범 후 10년 이내에 통합특별시의 세입 예산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100분의 60 대 100분의 40 수준이 되도록 국세의 세목 이양 및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 지원 및 특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5년마다 그 이행 실적을 점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국가의 포괄적 재정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재정지원하여야 한다.

1. 종전의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
2. 교통·물류 연계 및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3. 이 법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권한 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4. 지역균형발전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5. 사회간접자본의 개선 및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
6. 국립 문화시설의 설치 및 국립 문화예술단체 분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항과 관련되거나 통합특별시장이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지원위원회에 요청하는 비용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국가 일반회계 또는 제83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경남부산통합특별시 계정, 보통교부세 등으로 지원하며,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와 시·군 및 자치구 간의 경비부담률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1조(불이익 배제의 원칙)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① 국가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에 한한다)의 일부를 통합특별시에 지원한다.

② 통합특별시의 최초 예산은 종전의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편성·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예산 항목별로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지원 수준이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73조(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발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통합특별시에 교부한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징수하는 법인세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에 교부한다.

③ 국가는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을 통합특별시에 교부한다.

제74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

항제1호에 따른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통합특별시 출범 후 1만분의 2,2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②「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특별시에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0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특별시 지역의 시·군·구의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75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통합특별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간 통합특별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의 목적, 보정률, 적용 방식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처별 보조금 일체를 통합특별시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통합하여 편성·집행하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해 줄 것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한 보조금 교부 시 통합특별시장에게 포괄적인 자율 편성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77조(경비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에 대한 의견청취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의 경비 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지방재정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외에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8조(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에 대한 협의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통합특별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장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통합특별시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제79조(국고보조금 교부 시 의견청취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27조에 따라 기

획예산처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는 외에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장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통합특별시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지방재정법」 제27조 단서에 따라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도 제1항·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 요구 시 협의 특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특별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외에 미리 통합특별시장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명칭·목적·내용·금액 및 보조율
2. 통합특별시의 지방비 부담 규모 및 산정 근거
3. 통합특별시의 지방비 부담 시기 및 방법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의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검토하여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합특별시장과의 협의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특별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 요구 시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세 세율은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82조(신규 지방세 도입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특수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지역자원 이용 또는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의 조세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률로 새로운 지방세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특별회계·기금 및 재정운영

제83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경남부산통합특별시 계정 설치)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발전 및 행정통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국가보조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6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경남부산통합특별시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특별회계 전입금, 재정 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84조(지방소비세 정률 안분에 관한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간 재정 격차 해소 및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하는 지방소비세의 안분 기준 중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가중치를 100분의 3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중치 적용은 해당 통합특별시의 인구, 고령화율, 재정자립도, 기반시설 노후도, 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재검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 및 적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제37조의2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에 따른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간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경우에도, 사업시행 후에는 성과 평가 및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6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발전과 관계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재정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와의 협의를 거쳐 지방채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하거나 차환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 및 채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출자 또는 출연의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에 따라 출자 및 출연을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8조(복권 및 복권기금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인구소멸 방지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경남부산행정통합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경남부산행정통합복권의 발행·관리·판매, 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경남부산통합복권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복권의 발행, 복권기금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절 재정조정 및 공공자산 관리

제89조(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재정위기단체 및 재정주의단체의 지정을 면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통합특별시의 행정통합에 따른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행정·재정 통합 정착,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특례로써 적용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특례 적용 기간 동안 2년마다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재정위기 예방을 위한 자구노력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0조(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공기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통합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통합특별시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163조제2항 및 「지방공기업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경영투명성 및 재정건전성에 관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기업의 조직 및 운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중 통합특별시의 고유사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대부, 교환, 사용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감정평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물품의 취득, 사용, 보관, 폐기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대장 작성과 보고에 관한 사항
5. 감사, 벌칙,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제96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4장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

제1절 교육자치

제93조(교육감 선거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교육감을 둔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4조(학교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위임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관한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양자를 동시에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권한은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공동으로 행사하며,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법인은 통합특별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사립학교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교육·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사립학교법」 제40조의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한 통합특별시장”으로 본다.

제95조(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① 「사립학교법」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합병·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청산종결의 신고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통합특별시장에게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제35조제2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가와 협의하여 통합특별시에 귀속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연구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96조(영·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

조제1항·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4항, 제7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8호, 제29조제5항, 제37조 및 제4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권한 행사 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유아교육 재정 지원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97조(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19조제4항, 제19조의2,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60조의2제3항 등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 자격은 통합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98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통합특별시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필요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자율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9조(기존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수준의 보장) 국가는 통합특

별시 설치 이전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내 대학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받던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관련 재정·제도적 지원 수준을 통합특별시 설치 이후에도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0조(영재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본법」 제19조 및 「영재교육진흥법」 제1조에 따라 영재학교를 지정 또는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영재학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의 범위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영재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영재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쳐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구

체적인 선발 방법 및 기준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한다.

⑥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중심으로 편성·운영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장이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세부 내용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제 교원의 보수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⑧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영재학교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⑨ 영재학교의 학생은 그 능력과 소질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⑩ 영재학교의 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제도는 대학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01조(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의 육성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 「울산과학기술원

법」 제7조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11,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3조의3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과학영재학교를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보며, 과학영재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과학영재학교 설치를 위한, 통합특별시와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간의 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과학영재학교 설치·운영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2조(지역특성화고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전문화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이하 “지역특성화고”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국제화된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고등학교
2. 지역 산업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② 지역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 교

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임용 자격, 임용 기간, 급여, 근무 조건 및 계약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역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제19조, 제19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역특성화고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의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⑤ 지역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 선발 기준, 외국인 학생의 입학 비율, 외국인 교원의 활용 범위 및 학력 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03조(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와 한계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특수목적고등학교에는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중

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 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관리·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4조(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3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 간의 교차지도(다른 학교급의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를 허용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차지도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차지도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지원)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교육과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지역특화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학교 입학 전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학교 전·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학교를 병설하려는 경우 학교의 규모, 시설·설비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06조(지역별 구분모집 교사의 전보 제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규채용된 교사에 대해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07조(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내 우수 인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 소재 대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신규교사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인원을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8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통합특별시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통합특별시장

② 외국교육기관을 설립 승인권자인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외국교

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다만, 고등교육과정 외국교육기관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 기준 및 조건, 교육과정 운영, 학생 선발, 학력 인정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서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은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고등교육과정 외국교육기관은 "통합특별시장"으로 본다. 또한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법 제11조 제1항, 제3항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또는 교육부령(같은 법 제12조는 제외한다)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이 법에서 통합특별시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 국가는 국민이 통합특별시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 거주 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외국교육기관 및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 유치원에 대하여 부지 매입, 시설 건축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이나 부지 제공을 할 수 있다.

⑧ 외국교육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는 해당 기관의 운영 법인 또는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식은 조례로 정한다.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관리·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9조(경남부산통합특별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내에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변경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변경 시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교육부장관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설립
2. 외국어 전용 마을 조성 및 외국어 사용 환경 조성
3. 국제교류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110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영·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 특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한하며, 구체적인 지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한 유치원의 장은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3세 미만의 아동의 유치원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1조(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우수 인력의 유입 및 체류 지원을 위하여 주거, 교육, 문화 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2조(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다른 편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및 조직, 인사, 재정, 감사 등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제113조(교육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기준
2.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시·군·구 단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청의 조직·인사 및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 확보
2.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협력사업 활성화
3. 그 밖에 통합특별시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장은 관할 지역의 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지역 교육·산업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지역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교육장은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력이 필요한 교육 정책에 관하여 지역교육발전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역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두는 교육장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교육자치 강화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교육장 임용 시 해당 지역 주민과 교육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임용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⑥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참여 등을 거쳐 공모직위로 임용된 교육장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안의 편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⑦ 통합특별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4조(경남부산 통합에 따른 인사관리 특례) ①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 및 선발된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경상남도 또는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구역 간 인사를 교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는 제49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종전 인사관할구역별 인사 체계와 교원 수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종전 관할구역별로 분할하여 작성한다.

④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3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선택가산점의 종류, 적용범위, 기준을 종전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관할구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인사관리 특례의 적용 범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15조(공립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이하 “공립대안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공립대안학교의 설립기준, 시설·설비 기준, 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제116조(농어촌학교·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여건으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규모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학교 및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 유치, 생활·돌봄 환경 개선 및 지역 연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농어촌학교, 소규모학교, 농어촌유학을 운영·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농어촌학교 및 소규모학교 지원,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 교류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농어촌학교, 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17조(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연계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대학과 초·중등교육의 연계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과 협의

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고등교육 관련 사업의 기획·조정 및 실행에 참여할 수 있다.

1. 초·중·고와 대학 연계 교육과정 및 공동교육과정의 개발·운영
2. 고등학생 대상 대학 수준 교육 프로그램, 조기이수, 학점 인정 제도의 운영
3. 대학과 연계한 교원 전문성 개발, 예비교원·현직교원 연수 및 실습 프로그램
4.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진학·취업 연계 프로그램
5. 그 밖에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역할 분담, 재정 부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통합특별시장이 협의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18조(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우주항공,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의 특화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학교의 지정 또는 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특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역전략산업 분야 특화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공동으로 입주할 수 있는 교육·연구 복합시설 및 캠퍼스(이하 “지역산업혁신 캠퍼스”라 한다)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지역산업혁신 캠퍼스의 조성·운영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

학교, 대학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학교 특례 운영 요청, 대학 및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운영,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학생 모집정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정원을 정함에 있어 지역의 인구 변동, 산업 수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 모집정원 운영을 위하여 매년 학생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 모집정원의 탄력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20조(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외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지방공기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지역 전략산업에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학력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의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2. 고등학교 졸업자 맞춤형 고용 지원 및 채용 확대
3. 능력 중심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4.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후 경력개발 지원

②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통합특별시로부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지역 전략산업 소속 기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에 조성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기업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고용 노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졸업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일부 지원

2. 직업훈련 및 자격취득 비용 지원

3.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

4. 통합특별시 공공조달 입찰 시 가점 부여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지원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고용 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기업을 포상할 수 있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역량 강화 및 직장 적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현장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취업 후 계속교육 및 학위취득 지원

3. 직장 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고등학교-기업 간 채용연계 협약 체결 지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21조(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지역 전략산업 및 신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

기 위하여 국립대학교의 지역거점캠퍼스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 실증 및 산학협력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수산·해양 관련 교육·연구 및 산업 연계를 위하여 어장, 양식장, 항만, 연안 및 해양보호구역 등과 연계한 현장실습, 시험·실증 및 재교육 과정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연구 목적의 이용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어촌·어항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특례를 둘 수 있다.

제122조(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관내 「국립학교 설치령」 제8조에 의해 설치된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경우 필요 시 교육부 및 대학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립학교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으로 전환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교원(교장을 포함한다) 전보 및 승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③ 공립학교로 전환된 학교의 장은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학생의 현장실습 및 연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정 운영, 현장실습 등 부설학교 지정·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협약을 통해 정한다.

제123조(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공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
2. 해외 현지 취업박람회 및 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한 사절단 등의 운영
3.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예산 및 지원인력의 확보
4.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협력 지원 활동

② 통합특별시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지역 내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3.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124조(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다. 구조개선 명령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법인의 구조개선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5조(대학설립·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2항, 제61조제1항·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할 수 있다.

③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6조(대학 주도 평생교육·직업교육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대학, 산업계, 관계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정책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평생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운영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거나 별도의 교육과정을 승인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대학과 협의하여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점 인정 및 학위 취득에 관한 사항을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해당 대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직접 수행한다.

④ 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 및 기업 밀집 지역에 「평생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인가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대학의 산업캠퍼스 또는 현장실습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내 대학과 협의하여 “지역특화 전용학과”를 개설할 수 있으며, 입학 자격 및 선발 기준을 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7조(지역 전략사업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선발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한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학과에 대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대상 지역은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 학과의 지정기준,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요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28조(통합특별시 내 통합 대학 지원)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대학이 교육 및 연구 역량 향상,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9조(특성화대학 지정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미래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관할구역 내 대학을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미래신산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30조(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 및 초광역 성장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 내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 체계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대학과 지역 산업·연구기관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인재양성,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창업, 일자리 창출, 공용장비 활성화 및 지역혁신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

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1조(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 및 운영에 따라 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이 지역 발전과 연계·확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전략산업, 초광역 협력사업 및 국가 정책사업과 연계된 고등교육 혁신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32조(민주시민교육의 진흥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경남부산지역의 3·15의거 및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계승·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가치를 존중하며 평화와 인권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합특별시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경남부산의 민주주의 역사(3·15의거 및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을 포함한다)와 연계한 교육자료 개발
2. 학교급별 발달 단계에 따른 체험형·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3.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연구 지원
4. 지역 유관단체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과 위탁사업 등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정책 심의를 위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통합특별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교육 전문가 및 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통합특별시 내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매년 학교별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절 자치경찰

제133조(자치경찰제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특별시의 관할구역에서 수행되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② 대통령이 통합특별시의 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다른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자치경찰 조직·사무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치경찰과 자치경찰공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을 자치경찰공무원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의4제1항, 제62조제4항, 제65조의3제3항, 제67조의2제2항·제4항 및 제73조의2제3항 중 "인사위원회"는 각각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로 본다.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제1항 본문 및 제41조 중 "직급"은 각각 "계급"으로 본다.
3. 「지방공무원법」 제60조 본문, 제69조제1항제1호, 제71조제7항 본문 및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이 법"은 각각 "이 법 및 「경남부산통합특

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본다.

제135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① 통합특별시의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 자치경찰단장은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합특별시장이 행한다.

③ 자치경찰단의 조직 및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계급 구분·임용, 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교육훈련·직권면직·정년·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36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①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자치경찰단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끝나는 날에 60세를 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제145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1. 자치경찰단장에 임명할 수 있는 계급에 있거나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승진에서 조례에 따른 계급별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자치경찰공무원

2. 제1호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경찰학·법학·행정학 등 관련 분야 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의 임용절차·임용기간 등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37조(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과 사무수행방법은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경찰청장이 협약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당사자가 의견을 달리하여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신청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국가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한다. 다만,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약의 체결을 조정하였을 때에

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협약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협약당사자는 그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과 사무수행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협약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8조(「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본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 전단 중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찰관서”는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 중 “경찰관서”는 각각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중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각각 “자치경찰단장”

으로 보며,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는 “경남부산통합특별시”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각각 “통합특별시장”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은 각각 “통합특별시조례”로 보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각각 “자치경찰위원회”로 보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세강제징수의 예”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제139조(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려는 경우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그 의견 및 반영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한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른 재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 기한, 공개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0조(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감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150조에 따

라 감사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통합특별시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감사 절차에 참여하거나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통합특별시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와 공동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1조(자치경찰의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자치경찰의 조직 및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소, 무기고 등의 시설물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경찰과 항시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유선·무선 통신망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42조(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① 자치경찰위원회는 매년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자치경찰 활동을 평가하고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43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조)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유·무선의 통신망과 시설물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과 경남부산통합특별시경찰청장은 경찰인력 및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상황과 계획을 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되, 경남부산통합특별시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4조(조례 및 규칙 등의 통보) 통합특별시장은 자치경찰의 사무와 운영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안은 공포 예정 15일 전에 통합특별시경찰청장에게 전문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45조(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자치경찰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중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본다.

제146조(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치경찰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2. 자치경찰공무원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3. 통합특별시장의 요구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과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4.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5. 통합특별시장의 요구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6. 통합특별시장이 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과 규칙안의 사전심의
7. 자치경찰단장의 개방형직위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7조(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 등) ① 경찰청장과 통합특별시장은 자치경찰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상호 간에 긴밀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매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국가경찰 또는 소속을 달리하는 자치경찰조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당 임용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8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 운영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통합특별시장”으로, “경무관”은 “자치경무관”으로, “경정”은 “자치경정”으로, “경위”는 “자치경위”로, “경사”

는 “자치경사”로, “경장”은 “자치경장”으로, “순경”은 “자치순경”으로, 같은 법 제13조제3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0조”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은 각각 “통합특별시조례”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같은 법 제29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로, “같은 법 제72조제3호”는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3호”로 본다.

제149조(자치경찰에 관한 재정지원)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자치경찰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자치감사

제150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와 그 소속 기관 등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소속 인원의 모든 업무와 활동을 감사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교육·학예 분야 사무와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에 대한 감사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임명한 통합특별시교육청 감사

기구의 장이 수행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위촉하되, 3명은 통합특별시의회,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각 1명씩을 추천받아 임명·위촉한다.

④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의회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하려는 경우,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감사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⑥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제151조제2항 감사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감사의 방법·범위·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직무 수행에 있어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조직·인사 및 예산에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⑨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51조(감사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며, 필요시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임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감사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2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필요시 「소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소방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53조(자치감사계획)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사 실시 중에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 및 그 변경 내용을 감

사예정일 30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수립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원,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통합특별시장(교육·학예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사람: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의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협조 요구

⑤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통합특별시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범위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54조(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그 기관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5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 사건의 조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통합특별시장 및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시효 기간은 조사 종료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통합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및 출

연기관의 징계 절차에도 준용한다.

제156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15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4.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5. 「지방공무원법」제57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통합특별시장이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157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

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8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0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사무 또는 국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감사 의뢰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원, 감사 의뢰 기관장, 통합특별시장 및 감사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감사 결과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누락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감사 시 중앙행정기관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그 권한과 역할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59조(자치사무 감사에 대한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특별시

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0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자치사무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제154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사무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치사무에 대한 확인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통합특별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160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로 정한다.

② 통합특별시의회에서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사항 및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위증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도록 이 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1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 활동을 방해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6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

제4편 경제·산업수도 조성

제1장 경제·산업수도 조성에 관한 계획

제1절 경제·산업수도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16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경제·산업수도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경제·산업수도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9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 및 통합특별시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제·산업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2. 균형발전 및 시민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3. 경제·산업·교통·문화 등 광역 통합 발전에 관한 사항

4. 생활권·경제권 설정 및 광역생활권 개발·정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 및 글로벌 협력 등 지방외교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 여건 변화의 전망에 관한 사항

8. 지역의 공간구조 정비 및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9. 지역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시개발법」에 따른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지역의 물류·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13. 지역의 자원 및 환경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15. 지역의 방재·방범 및 안전계획에 관한 사항

16. 우주·항공, 해양·항만·물류, 자동차·조선·기계·방산, 에너지, 디지털·인공지능 및 바이오 등 전략산업 육성 계획과 추진에 관한 사항

17.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8.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9. 지역 교육의 진흥 및 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20. 지역의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21. 지역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푸드테크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2. 지역 토지·물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23. 지역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24. 지역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문화유산·체육·콘텐츠의 진흥에 관한 사항

25. 지역 정보화의 기반 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

26. 자치권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7. 각종 개발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투자 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8. 광역시설계획(동일 생활권 내 교통·용수공급·하수처리·폐기물처리·에너지공급·정보통신 시설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에도 기본계획을 수정·변경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1항의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에 「국토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다.

제163조(기본계획의 확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162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수치 조정, 용어 정정 등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164조에 따른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변경 또는 폐지된 기본계획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제18조에 따른 지원위원회,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4조(기본계획심의회) ① 제162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경제·산업수도 기본계획심의회(이하 “기본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반영과 주민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
4.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88조 및 제189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제376조에 따른 농촌활력촉진특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제584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기본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으로 하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부시장과 기본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기본계획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1.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부교육감
2.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가공무원
3. 우주항공·해양물류·주력산업·항만·산림 등 관련 중앙행정기

관의 지역본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절 개발사업의 시행

제165조(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66조(기초조사)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68조에 따른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조성사업 지역 안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곳,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소유

자 또는 점유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167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1. 국가, 통합특별시 또는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
2.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3. 우주항공·해양물류·주력산업·항만·산림 등과 관련한 대통령령 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관·기업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특별법에 따른 지역개발공사
5.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제168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에는 통합특별시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의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⑤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⑥ 개발사업의 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그 사실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⑦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기존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통합특별시장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9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68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결정·승인·지정·협의·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68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경관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경관 심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

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해제·신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지정,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지정,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 지구의 해제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1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 점용 허가

1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

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협의

2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행위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 해제

22. 「산림보호법」 제9조 및 제11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일반산업단지개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및 신고

25.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 변경·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

축허가 등의 동의

27.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등의 점용의 허가

28.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 인가

29.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3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 권역 지정·해제

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33. 「자연공원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3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3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3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

에 관한 협의

3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3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 허가·협의

39.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4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41.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 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 설비 설치 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4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협의·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시행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 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 허가

4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시행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4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

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 허가·신고

46.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48.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9.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50.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51.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5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관계 법률에서 정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개발사업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당 법령에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 후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 등의 기준, 효과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른다. 다만, 제1항제29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의 의견 제출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170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168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고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파견자에게 승진·전보·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71조(제한적 토지수용) ① 제168조에 따른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

업의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이 법 제168조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이면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68조제9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2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및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통합특별시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 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수익

4.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5. 토지채권의 발행금

6. 제176조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 귀속 개발부담금

③ 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취득을 위한 자금

2. 토지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3. 토지채권 발행금의 상환

4. 그 밖에 토지특별회계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물납 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73조(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업무·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수수료 등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74조(조세의 감면) ①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장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8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의 투자자 또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토지 등의 양도·취득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장은 이 법 제188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등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5조(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행정통합에

따른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168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의 범위,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76조(개발부담금 귀속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징수된 개발부담금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분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83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경남부산통합특별시 계정으로 귀속시킨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남부산통합특별시 계정에 귀속되는 분량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 귀속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통합특별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7조(개발사업지구 인근 지역의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168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제3절 경제자유구역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제178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효과에 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를 준용한다.

④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경영활동 지원,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등에 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지역의 요건, 지정·변경·해제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9조(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① 통합특별시장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4.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면적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6. 재원(財源) 조달방법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9. 교통처리계획
10. 산업유치계획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12. 환경보전계획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4.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7.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1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0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확정 또는 승인(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 확정 또는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및 계획변경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9.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변경

10.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제181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외국인투자기업
2. 입주국내복귀기업
3.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4.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간 주요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⑤ 제4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해당 국유·공유 재산의 가액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외국인투자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
2. 임대기간(매각의 경우 매각 후 5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3. 국유·공유 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182조(규제자유특구 지정 특례) ①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규제혁신 촉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내 지역을 우선적으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대상 과제의 신속 심의

2. 특구 내 규제특례 관련 관계부처 협의절차의 간소화

3. 실증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준용하되, 이 법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183조(실험시설 설치 완화)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 지구 및 특구에서 추진하는 핵심전략산업의 연구개발 및 성능검증을 위하여 엔진 테스트셀, 대형 구조물 실험동, 고온·고압 시험실 등 대규모 시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입지 절차의 간소화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성 검토 및 협의 절차의 단축 또는 통합 적용

3.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의 탄력적 적용

4.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 시간대 시험운영 허용 등 이격거리·소음 기준의 완화 또는 대체기준 인정

5. 실험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방음·차폐시설, 위험물 보관시설 등

부대시설의 설치 특례

② 제1항의 특례 적용은 실험·실증 목적에 한정하며, 상업적 활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특례 적용 범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환경보전과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 및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84조(비행시험 특별구역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 지구 및 특구에서 항공기, 무인비행체, 전기추진체계 등의 시험비행을 위하여 일정 구역을 비행시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비행시험 특별구역에 대하여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승인, 고도 및 시간대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예할 수 있으며, 그 적용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행시험 특별구역의 지정 절차, 운영 방식 및 규제완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5조(시험인증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 지구 및 특구에 핵심전략산업 제품 및 기술의 시험·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기존 시험자료의 인정, 시험결과의 상호인정, 통합심사 등 대체 절차를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인증기관 등과 협의하여 특

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인증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험시설의 공동활용 체계 구축

2. 국내외 공인기관과의 상호인정 협약 체결

3.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4. 시험·인증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및 인증기관 수수료의 감면

③ 제1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 특례 적용 절차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6조(규제샌드박스 활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융합촉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핵심전략산업 관련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특히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규제특례 및 실증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관련 신기술의 시험·평가 절차 간소화

2.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자력 기술 등 미래에너지 기술의 실증 특례 적용

3. 우주, 항공, 항만, 물류, AAM, 등 관련 기술의 실증 특례, 시험 평가 간소화

③ 제1항 및 제2항의 특례 적용 대상,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규제특례의 운영 및 실증환경 조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87조(수출허가 절차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은 핵심 전략산업 제품·기술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허가, 기술이전 승인, 수출통제 품목 등록 등과 관련한 서류 제출, 접수, 심사 연계 및 처리 절차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간소화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 간소화 및 통합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출 인허가 원스톱 상담·접수·처리 체계 구축
2. 관계기관(산업부, 방사청, 관세청, 외교부 등)과의 시스템 연계
3. 수출기업 대상 법률·인증·통관 관련 지원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은 수출금융, 보증, 보험 등 관련 제도를 정책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구축할 수 있다.

④ 수출허가 절차 특례의 적용 범위, 절차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원스톱 지원체계의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4절 투자유치 활성화

제188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 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 내용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는 통합특별시장이 관리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89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8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의 방법·절차 및 해제 시 권리·의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90조(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등)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 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국유·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투자진흥지구 중 항만·철도 등 광역 물류 인프라와의 연계성이 우수하거나 대규모 제조시설 가동을 위한 기반 여건의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91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통합특별시장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및 그 밖의 국유·공유 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임대 기간은 50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임대 토지에는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산 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재산 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⑦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⑧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국유지·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7조를 준용한다.

⑨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⑩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임대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다.

⑪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교량·항만·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 설치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2조(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우주항공 및 해양물류 중심도시의 전략적 육성과 경제·산업수도의 선도적 조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이전 시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장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등 조성

제1절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등

제193조(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무총리는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설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등”이라 한다)을 세계적인 우주항공·해양물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 해양수산부장관, 우주항공청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등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육성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통합특별시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육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2.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 연구개발 및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 상호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우주항공·해양물류 관련 기업의 창업과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5. 투자의 확대 및 재원(財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에 관한 사항

7.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내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9. 육성 사업과 연계성을 지니는 통합특별시 외의 지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무총리는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통합특별시장 및 시·군·구의 장과 협의하고, 제20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육성지원단의 심의·조정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육성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합특별시장·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은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

도시 등의 육성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육성 기본계획을 따라야 한다.

⑦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지역의 관련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⑧ 국가는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등의 육성 및 관련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지원하여야 한다.

제194조(중앙행정기관별 지원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의 육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통합특별시의 경제·산업·교육·문화적 특성과 지역별 발전 수요를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 배분계획, 사업 선정 기준, 시행 일정, 평가 및 환류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5조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등 건설추진단 설치) ① 국무총리는 통합특별시장과 공동으로 우주항공·해양물류 분야 비전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를 건설·운영하며, 이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등 건설추진단(이하 "건설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등 건설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등 건설을 위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구축·확충 및 기능 고도화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

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개발지구 임대사용료 등 수익금,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재원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5. 그 밖의 수입금

④ 건설추진단은 도시의 기획, 예산집행, 시설 운영 등을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⑤ 건설추진단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6조(통합특별시 연차별 실시계획) ① 통합특별시장은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수립된 연차별 실시계획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60일 전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전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추진 실적 및 주요 성과를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60일 전

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연차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제출·보고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연차별 실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7조(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조성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국가산업·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육성을 위하여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198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에 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9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99조(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조성위원회) ① 국무총리와 통합특별시장은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소, 산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맡는다.

②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조성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산업·물류·해양·금융·도시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조성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업무·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0조(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육성지원단) ① 국무총리는 통합특별시를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통합특별시의 관련 산업·기술·물류·도시 혁신 유관 기관을 중심으로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육성지원단(이하 "육성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우주항공 분야에 관하여는 우주항공청장, 해양 및 물류 분야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 도시 조성 분야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원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2. 지원위원회 및 육성지원단의 운영 및 정책지원

3. 우주항공·해양물류 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

4. 항공·우주·해양·물류 산업의 융합을 통한 신성장 전략 및 산업구조 고도화 계획 수립

5. 국내외 항공·우주·해양·물류산업 관련 정책·기술·시장 동향 조사 및 분석

6. 연구개발 및 실용화 지원, 산학연 협력 촉진 등 혁신기반 구축

7. 항공·우주·해양에너지·첨단물류 등에 관한 미래 성장동력 산업 과제 발굴 또는 유치

8.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9. 정부 또는 통합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항공·우주·해양·물류 관련 사업의 수행

10. 항공·우주·해양·물류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의 개최 및 지원

11. 그 밖에 육성지원단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무총리는 육성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통합특별시장,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육성지원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육성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1조(우주항공·해양물류 발전기금의 지원) ① 국무총리는 통합특별시를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세출 중 일정 비율을 매년 통합특별시에 우주항공·해양·물류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우주항공·해양물류 복합도시의 건설 및 지원사업의 추진
2. 항공·우주·해양·물류산업 관련 연구개발(R&D) 및 실증사업의 추진
3. 산업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기술혁신 및 창업 촉진 사업
4. 통합특별시 내 산업벨트 및 혁신클러스터 조성·운영
5. 그 밖에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비율, 사용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2조(외국인 우주항공·해양물류 산업 기술 인재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합특별시 내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관·기구에 소속된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 발급 절차 및 체류자격별 체류 기간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03조(신산업 실증을 위한 규제 완화) ① 국무총리는 통합특별시에서 우주항공·해양·물류·에너지 등 신산업 기술을 창출하거나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가 신청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특별시에서 우선적으로 실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해양 관련 기술·설비의 실증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실증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지원 기준 및 대상기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4조(우주항공·해양물류 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특례) ① 국무총

리는 통합특별시를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산업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 분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우주·해양·물류 관련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 조성 시책을 통합특별시에서 우선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 관련 산업기반 조성 시책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5조(지역기업의 우대)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심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206조(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등 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우주항공 중심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 내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 내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에 대하여는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주항공 분야의 산업과 관련된 체험관, 전시관 및 교육시설

2. 우주항공 분야의 산업전, 국제박람회, 국제회의 등의 개최를 위한 전시컨벤션 센터 시설

3. 체류형 복합 관광시설

③ 국가는 우주항공 중심도시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위치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이전·재배치·규모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 부지 확보, 시설 신축·보수 및 그에 따른 보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7조(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에 따른 주변 지역 활성화 지원 특례)

① 국가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 주변 지역에 대한 활성화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지원 대책에 관련 기관 유치, 해양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조세 감면, 필요한 관련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절 우주항공·해양물류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및 운영

제208조(우주항공·해양물류산업 진흥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무총리는 통합특별시장이 해당 관할구역 내 우주항공·해양물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1. 우주항공·해양물류산업 등을 포함하는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기반의 인프라와 인적자원이 일정 기준 이상 확보된 경우
3.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후 3년 이내 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지정된 경우,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해 지정 이전이라도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09조(우주항공·해양물류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에 관한 특례) ① 국무총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합특별시장은 이에 대한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의견 반영 및 제2항에 따른 조정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0조(우주항공·해양물류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한 지역이 우주항공·해양물류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요건을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1조(우주항공·해양물류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한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연구개발특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변경 요청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만으로 특구의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제7항·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제7항 중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절차 및 변경기준, 협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2조(우주항공·해양물류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효율화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산업 및 공간 여건을 고려하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조정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13조(우주항공·해양물류 연구개발특구 재투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지역산업발전 및 연구개발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공동으로 개발이익의 재투자 시기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투자는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기업지원, 창업 촉진, 산업생태계 고도화, 인재양성 등 통합특별시의 과학기술 및 산업진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 절차,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14조(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지원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인프라 조성, R&D 투자, 인재양성, 세제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지원의 범위 및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5조(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우주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대하여 인프라 조성, R&D, 인력 양성, 세제 및 규제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지원 방식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6조(우주항공캠퍼스의 조성 및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우주항공 산업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구역 내에 우주항공캠퍼스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6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우주항공캠퍼스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이하 "우주항공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여야 한다.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학
2.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설립된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항공분야 국내외 연구기관

③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우주항공캠퍼스에 우주항공 관련 학과, 연구소, 실습센터 및 교육 지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국내외 우수한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첨단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우주항공캠퍼스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외국 교육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의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제9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⑦ 우주항공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주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입주절차 및 입주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⑧ 우주항공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의 설립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은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⑨ 사업시행자는 우주항공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우주항공캠퍼스에 둘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공익법인은 사업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관ㆍ단체ㆍ개인ㆍ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⑪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⑫ 통합특별시장은 제7항에 따라 입주한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우주항공캠퍼스 입주승인기준 이행 또는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주항공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⑬ 통합특별시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제12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⑭ 통합특별시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절 국제물류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17조(국제물류진흥지역 우선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8조를 준용하여 통합특별시장이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경우 해당 지역이 동법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 내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결정·수립·확정·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변경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확정 또는 승인(국제물류진흥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 확정 또는 승인받은 경우에 한한다)

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변경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변경

9.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0. 「자연공원법」 제8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및 편입

1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2.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3.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14. 「항만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변경

1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1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같은 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 및 제8조제3항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같은 법 제7조의6제2항에 따른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1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의 수립(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정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의 공항·항만과 그 배후지에 대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공항·항만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 내에서의 관세절차 및 신속한 환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⑦ 통합특별시장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

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⑧ 기획예산처장관은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물류산업 또는 물류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사업(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정한다) 중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⑨ 공공기관의 장은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물류산업 또는 물류 관련 산업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신규 투자사업 또는 자본출자(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또는 출자에 한정한다) 중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18조(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의 효과) ① 통합특별시장(국제물류진흥지역이 인접 지역 시·도의 일부를 포함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포함한다)은 제217조에 따라 지정된 국제물류진흥지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제4절 공항 및 항만의 운영 자치권 강화 특례

제219조(경남부산통합특별시 신공항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가덕도신공항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신공항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신공항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공항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남부권 관문공항 활성화를 위한 노선 개발 및 운수권·슬롯 배분에 관한 사항
3. 공항 주변 지역 개발 및 에어시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신공항관리위

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항 운영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신공항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가덕도신공항의 운영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하 “가덕도신공항운영공사”라 한다)의 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

⑤ 그 밖에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신공항관리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20조(가덕도신공항 운영법인의 지분 소유 및 인사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가덕도신공항운영공사의 수권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10 미만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비율을 정할 때에는 통합특별시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단계에서 출연한 금액 및 공항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 투입한 비용을 출자 자본금으로 환산하여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가덕도신공항운영공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의 비상임이사 중 3분의 1 이상을 추천할 권한을 가지며, 임명권자는 통합특별시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④ 가덕도신공항운영공사의 상임이사 중 1명은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며,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파견할 수 있다.

제221조(공항시설 관리업무의 사무 배분 및 위탁 특례) ① 가덕도신공항의 시설 중 「공항시설법」에 따른 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접근교통시설 등 승객 이동지역(Landside)의 운영 및 관리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사무로 본다. 다만, 사무는 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통합특별시의 사무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가덕도신공항운영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통합특별시장은 해당 시설의 임대료 및 점용료 징수권을 가진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가덕도신공항 주변 지역의 에어시티 개발 및 운영에 관하여 가덕도신공항운영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통합특별시가 주도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에어시티 조성을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가 지정한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장기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222조(공항 운영 수익의 재투자 및 조세 감면 특례) ① 가덕도신공항운영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37조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결손금 보전 및 적립금을 제외한 처분 가능 이익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통합특별시의 공항 배후단지 조성 및 연계 산업 육성, 주변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우선 배정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의 구체적인 관리 및 사용처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가덕도신공항 및 그 배후지역에 입주하는 항공 관련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의 대상인 기업의 범위, 감면 비율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23조(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사천공항이 우주항공 중심 공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천공항의 조속한 국제공항 승격을 위해 공항시설법과 관세법에 따른 국가계획 반영, 국제항의 시설기준 설치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4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재원의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다.

제225조(부산항만공사의 이관 및 지방공사화 특례) ① 「항만공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제6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소유한 부산항만공사의 지분 전부 또는 과반을 통합특별시에 이양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통합특별시 항만공사”)로 전환한다. 다만, 전환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통합특별시 항만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49조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법」에 따른 사업 범위 및 권한을 승계하며, 정부의 자본금 출자분은 통합특별시에 대한 현물출자로 보며, 그 가액은 이법 시행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

에 체결된 부산항만공사의 계약, 채권·채무 관계 및 소송사무 등은 국가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③ 통합특별시 항만공사의 설립등기, 정관,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 범위에 관하여는 「항만공사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④ 부산항만공사 소속 임직원은 통합특별시 항만공사 설립과 동시에 통합특별시항만공사의 임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근로조건을 유지한다.

⑤ 국가는 통합특별시 항만공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환일부터 5년간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6조(항만위원회의 독립성 및 인사 자율성 확보) ① 통합특별시 항만공사의 사장·감사 및 임원은 「항만공사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소속 항만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며,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항만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자격·임기·해촉 및 제1항에 따른 임원 선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항만위원회는 통합특별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물류·경영 분야 전문가, 해양수산부 추천 인사 및 통합특별시 추천 인사로 구성하되,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임원의 임기, 해임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항만공사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27조(항만의 관리권 및 계획수립권 등 이양) ① 통합특별시장은 「항만법」 제2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항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관리청이 되고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고시 권한을 가진다.

②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내 항만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항만법」 제6조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변경한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수립·변경한 항만기본계획을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협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국가 물류정책 및 항만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28조(항만 수익의 귀속 및 재정 자율성 특례) ① 통합특별시 항만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 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 등의 결과물은 「항만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항만공사에 귀속시킬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설치·취득한 재산 및 국가재정이 투입된 부분의 귀속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관할 항만에서 발생하는 「항만법」 제42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을 통합특별시의 세입 또는 통합특별시 항만공사의 자율 예산으로 편성·집행한다.

③ 귀속 대상의 범위, 소유권 이전·등기, 국유재산 정리 및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익은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항만 경쟁력 강화 및 항만 배후지역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익의 징수·관리 및 사용 현황을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9조(항만 관리 사무 수행에 따른 재정 지원 유지) ① 국가는 항만 관리 권한이 통합특별시로 이양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3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21조에 따라 이 법 시행으로 이양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규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이 협의하여 정하고 지원 대상 경비의 범위, 산정 기준 및 물가변동 반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는 「항만법」,「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 항만공사가 수행하는 항만 개발사업·항만 재

개발사업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항만 구축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30조(항만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준 완화 특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내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미래 첨단전략산업 거점 구축 및 주력산업의 고도화

제1절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제231조(과학기술 혁신 전담기관 설치)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과학기술혁신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2조(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과학기술 역량증진을 위

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조직 우선 설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과학기술 역량증진을 위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분사무소 또는 지역조직 설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해당 지역 조직이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해당 분사무소 또는 지역조직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3조(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우선 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첨단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2. 우주·항공, 인공지능(AI), 항공MRO, 원전, 소형모듈원자로, 방위, 로봇, 양자, 미래 모빌리티, 수소, 이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등과 관련된 통합특별시장이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산업 및 신산업

② 제1항의 세부 산업분야 및 기술 내용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34조(첨단전략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점검 제도 면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3조에 따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235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권한위임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우선 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통합특별시장이 수립한 특화단지 계획이 국가산업전략 및 입지 요건과 정합성을 가질 것
2. 지역산업 여건, 기반시설, 기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적효과가 기대될 것
3.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을 것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신청, 접수, 관계기관 협의,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
2.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
3.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4.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
5.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인·허가 관련 협의 절차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에서 추진하는 특화단지 지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재정 지원, 인허가 협의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화단지의 조성 및 운영 효율성을 위해 예산집행, 인허가, 세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여야 하며 위임 기준 및 절차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 요청 절차, 요건, 간소화 대상 및 처리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6조(국제공동개발 프로젝트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핵심전략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 연구기관, 대학, 다국적기업 등과의 국제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유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제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관은 국가 및 통합특별시장의 지원을 받아「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이전 협약의 체결, 공동연구성과의 공동출원 및 지식재산권의 공동관리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방위사업법」, 「우주개발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기술수출입 허가, 통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심사에 대하여는 서류 제출, 접수, 관계기관 협의 및 처리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기준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37조(클러스터 R&D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핵심전략산업의 공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클러스터 내에서 두 개 이상의 도내 기업이 공동으로 출원하거나 보유한 특허 또는 연구개발 성과를 연구개발, 기술실증, 생산공정 개선 또는 사업화에 공동 활용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가격, 생산량,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공동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클러스터에서 공동으로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 참여를 위한 생산확인, 규격확인 및 품질인증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확인·인증 절차에 대하여 서류 제출, 심사 및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의 통합
2. 공동개발된 기술의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혁신제품 지정, 우선구매 대상 지정 등 행정적 지원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 적용 범위,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8조(첨단전략산업 및 첨단기술분야 병역 특례) ① 병무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 내 첨단전략산업 및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우수 인재에 대하여 「병역법」 제36조·제37조·제38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포함한 병역 특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병역 특례 적용이 필요한 산업 분야 및 인력에 대한 의견을 병무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9조(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거점, 기반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광역 단위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공지능 클러스터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구축·확충 및 기능 고도화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2.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NPU 등) 기반 시설 및 연계 시설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인공지능 클러스터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인공지능 클러스터 내 시설 구축, 기업 이전 등 관련 사업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를 의제 처리하거나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제240조(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인공지능 기반 제조 산업, 기술 및 실증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을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국가는 통합특별시민의 인공지능 접근성 제고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험·공공서비스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과 통합특별시 전 지역

을 연계하는 통합 교통·물류·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1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인공지능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에 대하여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기본법」 제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조성한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의 전담기관 지정시 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한 기관을 최우선적으로 전담기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인공지능기본법」 제23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하여 전력·용수 등 기반인프라 시설을 수요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통합특별시장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제242조(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문화 융합기술 기반의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이하 "실증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실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반 건축물, 스마트 인프라 및 자율형 도시시설의 설치에 관한 건축기준 완화
2. 실증 목적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규제의 일부 완화
3. 자율주행, 개인형 이동수단, 지능형 교통체계 실증을 위한 교통 관련 규제 특례
4. 디지털·지능형 광고물 및 공공정보 제공 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제 특례

③ 제2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기간은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지정하되, 실증 성과 및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정된 실증지구 육성 및 규제 완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43조(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내 지역에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하고,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이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이 조에서 "인공지능데이터뱅크"란 인공지능 학습·추론·검증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정제·결합·관리·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포함하는 공공 기반 데이터 관리·활용 플랫폼을 말한다.

④ 인공지능데이터뱅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용·검증용 데이터의 구축 및 제공

2. 데이터의 비식별화, 익명화, 결합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처리 및 관리

3. 인공지능 기술개발·실증·사업화를 위한 데이터 접근 및 활용 지원

4. 인공지능데이터의 품질 관리, 표준화 및 신뢰성 확보 지원

⑤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및 관련 사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서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연계·협력 방식으로 운영한다.

⑥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4조(인공지능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인공지능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조AI, 모빌리티,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문화 등에 전문화된 특화산업도시를 연계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모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첨단산업의 연계와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특화산업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첨단전략산업 분야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되어 있거나 집적할 계획이 있을 것
2.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한 연구·실증·생산 인프라 및 기업 지원시설이 구축되어 있거나 구축할 계획이 있을 것
3. 특화산업 생태계의 상호 보완성 및 연계 효과가 인정될 것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화산업도시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의 기획·조정
2. 특화산업도시 간 인프라, 데이터, 자원의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및 공동활용 활성화
3.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통합 지원
4. 인력 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 홍보
5. 특화산업도시 간 교통의 연계
6. 그 밖에 특화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45조(에이전틱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 ① 통합특별시장은 모든 행정 프로세스에 에이전틱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단순 반복 업무를 완전

자동화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민원 처리, 인허가 검토,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주요 행정 업무에 에이전틱 인공지능을 배치하여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46조(디지털 트윈 정책 시뮬레이션) ① 통합특별시는 예산 100억 원 이상의 주요 정책 결정 전 통합특별시 전체를 가상화한 디지털 트윈 상에서 정책 효과 및 부작용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가 보안망 내에서도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하여 민간의 최신 거대언어모델(LLM)을 보안 처리 후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한다.

제247조(데이터센터 설치 관련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과 제조・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및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동등 이상의 안전성・환경보전 수준 및 공공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산지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른 입지,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환경평가와 관련한 인・허가 및 협의 절차
2. 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전력공급, 냉각시설 및 통신망 구축과 관련한 기반시설 설치 기준 및 협의 요건
3. 그 밖에 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인·허가 또는 기준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데이터센터를 제조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로봇 등 핵심전략산업과 연계한 기술실증센터로 지정하거나, 관련 실증 테스트베드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 적용 범위, 절차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8조(연구개발특구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거점 또는 그 인접 지역에 대한 연구개발특구 또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우선 지정해 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해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특구 내에서는 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기술창업 및 창업보육 지원,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지원을 확대할 수 있으며, 그 적용 대상,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반도체·방산 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반도체 및 방산 클러스터와 연계한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반도체 및 방위산업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기업 유치 및 지원

2. 신산업 기술 융합 지원 및 산업 간 협력 촉진

② 제1항 이외에 반도체, 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반도체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반도체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연구기관을 반도체 연구센터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 연구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원에는 신산업화에 필요한 인재양성, 국제 협력, 시장 진입 지원 등도 포함하여야 한다.

제250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력(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한다)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폐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연결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5. 그 밖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51조(이차전지산업 육성에 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이차전지산업의 국가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국가계획과의 연계
2.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 실증·시험, 성능·신뢰성 평가 인프라의 구축 및 공동 활용
3. 이차전지 원료·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4. 이차전지산업 관련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또는 규제특례의 적용

5. 이차전지 전문인력의 양성, 유치 및 정착을 위한 특화 인력지원 사업

6. 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력·용수·폐수·물류 등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대한 국가 지원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우선 지정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의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지원 사업에서 통합특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2조(국가로봇테스트필드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을 위해 사업대상지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국가로봇테스트필드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로봇사업자가 국가로봇테스트필드에서 실증을 할 경우 국가는 그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로봇사업자가 기술 및 제품의 실증을 위해 규제특례를 신청할 경우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3조(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①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통합특별시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추진되는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실증, 보급 및 사업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연, 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4조(함정 유지보수관리 지원) ① 국가는 해군 및 해양경찰 함정의 정비·수리·개조(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 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내 시설이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함정의 정비·수리·개조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재정,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5조(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 조성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산업 육성
2. 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3. 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연구·개발·실증, 유지·보수, 정비 등 기업 육성

4. 국산화 기술개발, 시험·인증 등 연구기관 설치

5. 인력양성, 교육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6.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간 협력 및 투자 촉진

7. 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 개발과 관련한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재정, 금융, 세제지원

8. 그 밖에 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 조성 및 원자력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탄소중립 실현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 지역을 원자력 발전 및 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특구 내 원자력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이하 “전기사용자”라 한다)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특구 내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확보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가 특구 내에 필요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⑦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특구의 기반 조성, 체계적 육성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6조(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협력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첨단의료산업의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우선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7조(양자산업 육성 및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에 대한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설치한 연구소 등을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및 양자팹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센터에 대하여, 운영 지원,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지원 항목과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8조(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① 국가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동 혁신과 공간의 연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인프라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9조(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거점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 내의 복수의 산업단지, 연구단지 및 실증구역 등을 연계한 경남부산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클러스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빌리티 미래도시 및 미래차 국가산단 등이 연계된 산업단지
2. 자율주행·커넥티드카, 친환경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드론, 배터리, 이동 로봇,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서비스(MaaS)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3. 부품·소재·완성품 제조기업 간 공동 개발·생산·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및 스마트 제조혁신 체계 구축
4.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국제 품질인증·표준화 지원

② 국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규제특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비

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업 이전, 시설 구축, 용도지역 변경 등에 관한 인허가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의 지정,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통합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⑤ 국가는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와 관련된 재정·금융 지원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0조(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지정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특별시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특별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규제의 신속 확인, 같은 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제49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3.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제10조의3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제261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와 제11조의2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항공 안전 및 국가 공역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지역 특성에 맞는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2조(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정·변경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전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조제4항과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63조(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 지정 특례)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이 해당 거점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된다.

②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 요건, 운영 절차 및 안전 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64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운영 특례)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과정에서 해당 법 제11조 제1항·제2항·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기준, 운영 조건, 관리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조성 및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6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특례) 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 내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3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66조(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 없이, 사업의 적정성을 자체 분석·검토한 후 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검토 결과는 지체 없이 통합특별시의회에 서

면으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 내부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자체 검토 후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합리적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통합특별시는 해당 지원사업을 조정하거나 재검토할 수 있다.

제267조(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제3항·제4항 및 제11조제4호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5호
5.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8조(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된다.

제269조(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전략산업의 연대·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 연구개발(R&D), 핵심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상호 공유·활용
2. 생산시설·장비의 공동 투자·이용 및 부품·원자재의 상호 수급 체계 구축
3. 공동 브랜드 개발, 온라인·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공동 마케팅·인증 획득

②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통합 지원하는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연대협력체의 신청, 지정,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단일 창구에서 일괄 처리하며, 정부는 관련 인허가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0조(지역특화발전특구 등 특구·클러스터 연계·통합 관리) ① 통

합특별시장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각종 특구 및 클러스터, 지구를 연계·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구 및 클러스터, 지구의 연계·통합 관리를 위하여 통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1조(시·군·구 특성화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의 각 시·군·구별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여건과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성화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군·구별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지원방식, 성과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성화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2조(중소기업 종사자 공동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향상 및 지역 인재 유치·정착

을 위하여 지역기업, 소상공인, 서비스업체 등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공동복지사업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통합복지카드를 발행·운영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남부산 중소기업 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통합특별시조례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3조(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 ①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신산업 분야의 인재 유입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대학·연구소와 기업 간의 채용 연계형 인턴십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2. 미래신산업 분야 취업 희망자에 대한 맞춤형 직업 훈련, 경력 설계 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3. 지역 인재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임금

보조 또는 사회보험료 지원

4. 그 밖에 인재의 고용 촉진 및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나 공사·물품 구매입찰 하는 경우 지역 내 미래신산업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74조(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인재에 대하여 일정 기간 무상 임대하는 등 주거비 지원정책을 시행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지원 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5조(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미래신산업단지 또는 연구개발특구 인근에

우수 학교를 유치하거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 금액 등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절 주력산업의 고도화

제276조(제조 인공지능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제조업 고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 자동화 및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기술의 적용
2. 핵심전략산업과 연계한 인공지능기반 공정전환 실증단지의 조성
3. 인공지능 기술 기반 제조 데이터의 수집·활용·분석을 위한 인프라 및 거점 조성
4. 제조AI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실증·검증·상용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혁신거점 내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

전력공급, 통신설비 구축 등에 관한 규제의 완화·유예

2. 인공지능기반 공정전환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 건축, 환경 등 관련 인·허가 절차의 일괄 처리 또는 의제 처리

3. 제조 인공지능 관련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 및 산학연 컨소시엄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보조금 지급

③ 국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의 적용 대상, 지원 기준,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인·허가 절차 간소화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7조(선박 인공지능 고도화 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조선산업의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용 선박, 특수목적선박 및 조선기자재의 설계, 생산, 유지보수 또는 성능검증 과정에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과 그 실증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융자, 세제지원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용선박 및 특수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국방산업체 및 조선소

2. AI 기반 조선기자재 개발 및 스마트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3. 산학연 연계로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을 수행하는 기관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의 적용 대상, 지원 기준, 지원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78조(자동차산업 정책수립 및 기반조성 사무의 위임)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발전법」 제48조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1. 자동차산업 관련 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및 기반시설 설치 승인

2. 자동차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연구개발사업 승인

3.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승인 및 관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제279조(자동차산업 인허가 및 실증특례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융합 촉진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기술(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등) 관련 실증·상용화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증특례 인·허가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해당 부처 장관은 통합특별시와 공동으로 실증특례 관련 행정처리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0조(자동차산업 재정·세제 및 금융지원 협력) ① 통합특별시장은 자동차산업의 투자촉진 및 기술혁신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 등에 따른 지원사업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통합특별시의 산업육성계획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세제·금융지원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협력방식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1조(기계산업 정책수립 및 기반조성 사무의 위임)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발전법」 제4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4조,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위임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기계산업 관련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입주계획 승인
2.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승인
3. 기계산업 시험·연구시설 지정 및 승인

② 제1항의 사무에 대한 구체적 위임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2조(기계산업 인허가 및 실증특례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융합 촉진법」 제36조, 「산업표준화법」 제40조,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계산업 관

련 인허가 및 실증특례 절차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실증특례 절차의 통합 및 간소화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3조(기계산업 재정·세제 및 금융지원 협력)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계산업에 대한 투자·기술혁신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사업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특별시와 협력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4조(조선산업 정책수립 및 기반조성 협력)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조선·해양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수립하는 「산업발전법」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상의 사업계획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조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조선기술의 효율적인 지원과 투자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285조(조선산업 사업 지원) 국가는 조선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 친환경·디지털 전환 촉진 및 국가기간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의 조선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연료(전기·수소·암모니아 등) 기반 선박 및 기자재 기술개

발・실증

2. 자율운항선박, 스마트조선, 디지털트윈 등 조선 공정의 디지털화・고도화

3. 조선산업 생산공정의 자동화 및 에너지 효율 향상

4. 조선산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직무 전환 및 전문인력 양성

제286조(조선산업 인허가 및 실증특례 협력) ① 통합특별시장은 「선박안전법」 제81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23조에 따라 조선산업 관련 실증특례 또는 인허가 제도 개선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산업융합촉진법 등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 시 통합특별시와 공동심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87조(조선산업 재정・세제 및 금융지원 협력) ① 통합특별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 및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 제33조에 따라 조선산업 지원방안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통합특별시의 전략산업계획에 따라 관련 예산 및 금융수단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절 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혁신 지원

제288조(국가산업단지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한 지정의 방법 및 절차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다.

제289조(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 관련 기술의 연구 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남부산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지정과 개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관련 절차를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절차에 따른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단 신

산업 육성과 관련된 첨단산업 기술개발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90조(국방특화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① 국방산업의 육성과 국방특화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국방 국가산업단지 및 관련 시설을 우선적으로 조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활동을 우선 지원한다.

1. 국방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시설
2. 국방 관련 제조업체의 입주 및 지원 시설
3. 국방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
4. 국방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소 운영 지원 시설
5. 기타 국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국방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은 국방 국가산업단지의 확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방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국방 국가산업단지의 운영과 수출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특별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국방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국방산업 관련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특별시의 국방특화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91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항, 제7조제7항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37조제1항·제2항·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7조제1항 본문·단서,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37조제4항·제5항, 제46조의2제3항, 제46조의4제2항 및 제46조의6제4항 중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92조(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당계획이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기사

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3조(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에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거점 공항·항만 또는 국가기간 철도망과 연결하기 위한 기반시설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94조(임대전용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에 지정되는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 국가는 해당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5조(산업단지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산업단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구축을 위하여 산업단지 안의 부지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입주(업종) 제한 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환경기초시설을 산업단지

기반시설로 본다.

② 통합특별시장 또는 산업단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단지 지정권자·관리권자와 협의하여 관리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96조(첨단전략산업 규제특례 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3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제10조의6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권한 위임의 적용 구역은 통합특별시 지역으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이 국가에 특례 신청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경우 국가는 특례 승인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7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특례)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7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내에 경쟁력 강화를 긴급히 요하는 노후 산업단지의 경우 공모 절차 없이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98조(노후거점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지원 특례 등)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이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우선하여 처리하거나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전설비 등의 설치 및 구축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99조(노후산업단지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 해제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 산업기능 유지, 일자리 감소 최소화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노후산단 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련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군·구에

위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국가와 협의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 국가에 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이전을 위한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비용

2. 산업단지 이전에 따른 기업 공장 신축·개보수 등 이전 비용

제300조(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소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벤처투자, 정책금융 및 보증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 정책목적형 펀드에 대한 출자

2. 중소기업 융자제도 우대 및 보증제도 수립·운용

3. 실증사업, 규제특례사업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한 사업화 투자 및 후속투자 지원

제301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2항, 제17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같은 법 제16조의7제3항, 제1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7조의4제1항·제7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대통령령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02조(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운영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창업 집적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창업 집적 시범지구 내에서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 인재 양성, 공간 제공, 멘토링, 비즈니스 협력 기회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운영 방식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03조(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연구개발, 산업기술 발전, 인재 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학협력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기업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산학협력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는 기업이 위치한 지역

3. 그 밖에 산학협력 선도지구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미래첨단산업 관련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학협력 선도지구의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2.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3.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4.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5. 대학·연구소·기업 간의 연구개발 및 기술 이전

6. 대학과 기업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및 채용

7. 취업 및 기업 지원 프로그램

8. 해외 우수 기술 및 인력 유치

9. 그 밖에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절 글로벌 기업 유치 및 지원 강화

제304조(가업상속공제 특례) ① 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도 불구하고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도 동일하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전 후 5년간 고용 유지 등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05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로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통합특별시에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지원 외에 해당 지원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33조제1항 각 호의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5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통합특별시 간의 재원 분담 비율은 국가가 총 지원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담하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비 부담 비율을 최소화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일부를 사업장의 착공 또는 투자 개시 시점에 선제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원금 지급 대상, 지급 시기 및 선지급 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06조(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로

국내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액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앵커기업이 협력업체와 함께 통합특별시로 복귀하는 동반 복귀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100분의 20까지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 비율은 국가가 총 지원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담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복귀기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자금 지원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임대, 장기 저리 융자 및 규제 샌드박스 우선 적용 등 패키지 지원책을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복귀기업은 고용 유지 및 지역 투자 요건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족하여야 하며, 기업 규모별로 환수 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

제307조(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제308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 외국인투자자가 사업장을 신설·증설하거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금 분담 비율은 국가가 최소 100분의 80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가 부담하는 현금지원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추가 금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 유형, 투자 비율, 업종 등 세부 기준과 사후 의무(고용 유지, 지역 기여 등)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09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범위, 지급 대상 거래 규모, 적용 절차 및 조건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1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 내 연구기관·기업·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 체류자격 및 변경, 체류 기간 상한을 달리하는 등의 출입국 절차를 통합특별시장 명의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드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 대상 및 절차, 회신 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11조(외국인 근로자 고용 특례)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4제1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되며, 이를 통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를 통합특별시가 직접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이양되는 경우 관련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되며, 이와 관련된 절차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12조(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계획에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환경 및 주거 여건 실태 조사
2.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3.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의료 지원 및 자녀 보육·교육 지원 방안

②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

숙사 또는 공동 숙소를 건립하거나 개량·보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요청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및 체류 자격 변경 요건의 완화
2.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 및 재입국 절차의 간소화
3. 통합특별시 내 특정 구역 또는 산업 분야에 한정하여 취업 활동을 허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쿼터 확대

④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언어 소통 및 갈등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성화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13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설치 등)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장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지원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유치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유치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필요하면 보육·교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급대상과 지급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14조(외국 자격인증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의 전문인력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등에 따른 외국 자격의 국내 인정에 관하여 자격의 동일성·유사성 심사, 제출서류, 검정 또는 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및 국가 간 상호인정 협약 체결 등에 관한 제도적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 자격의 신속 심사, 통역 지원, 업종별 인정 기준 마련 등 편의 제공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 자격의 국내 인정 대상, 인정 기준, 심사 절차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5조(외국인 고용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산업 활성

화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적용 대상 업종,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고용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절차에 관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 업종, 사업장별 허용 인원, 고용허가 신청 절차 및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의 조정에 관한 의견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고용 특례의 적용 대상, 조정 기준, 신청·심사 절차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6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투자진흥지구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317조(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에 국제적 수준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외국어 특화학교 등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초ㆍ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교육기관의 설치 기준, 교원 자격,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특례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수학제 운영, 외국인 학생 입학 요건 완화, 등록금 자율화 등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8조(국제적 수준의 정주환경 조성)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주거, 의료, 교통, 치안, 보육, 편의시설 등 정주여건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의료법」 등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거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대상 임대주택, 국제의료지원센터, 외국인 보육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국제적 수준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9조(외국인 등의 의료기관 및 서비스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정주환경 조성과 외국인 및 기업 종사자 등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의 유치 및 시설 확충

2. 외국인 대상 다국어 진료, 통역, 긴급 의료 대응 등 서비스 체계 구축

3. 국제의료협력 병원, 의료관광 연계 클리닉 등 특화 의료기관의 설립 지원

4. 취약지역 또는 거점 지역 내 응급의료, 분만센터, 재활시설 등 기반 강화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지 제공, 건축 관련 인허가 절차의 통합 및 간소화

2. 의료설비 도입 및 인력 확충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또는 융자

3. 의료기관과 지역 보건소, 대학병원 간 협력 체계 구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절차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0조(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① 경제자유구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용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1조(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특례) ① 통합특별시는 정책펀드의 기획·운용, 공공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개발,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금융회사를 출자하여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른 인가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당 투자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한도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는 지방소멸대응, 지역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고 출자할 수 있다.

제5절 금융특구 및 금융산업·핀테크 특례

제322조(글로벌 금융거점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등) ① 정부는 금융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금융산업의 도입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환경을 조성하는 등 통합특별시가 금융경쟁력이 있는 외국 도시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제외나 규제 권한의 이양(이하 "규제 특례 등"이라 한

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국제적 금융거점이 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된 금융 분야 발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시책 및 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323조에 따라 지정되는 금융특구의 조성 및 지원, 그 밖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323조(금융특구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고 미래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특정 지역을 금융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금융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특구를 지정한 목적의 달성이 매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금융특구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4조(금융특구의 특례 등 지원) ① 정부는 금융특구에 입주하는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에게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합특별시장은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특구 내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 및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통합특별시장이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화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특구 내 입주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325조(금융특구지원센터 설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특구 내 관련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지정 해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6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글로벌 금융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7조(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8조(금융교육의 실시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주민이 금융에 관한 올바른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시민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통합특별시 내의 금융교육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9조(통합특별시 핀테크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핀테크육성지구(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누리기 위한 연금 및 보험업

과 생명경제도시 형성을 위한 부동산간접투자상품 및 연기금·보험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업과 연계되는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들을 집적할 목적으로 설치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내 기업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이를 우선 심사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육성지구 내의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육성지구 내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컨설팅
2. 육성지구 내의 기업이 개발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의 요건을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의 요건 충족 확인 지원
3.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육성지구의 지정·해제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30조(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해당할 것

나. 주민이 보유한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총자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부동산으로 구성할 것

②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초과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31조(통합특별시 소재 지역 금융에 대한 산업자본 지분 특례) 「은행법」 제15조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 적용한다.

제4장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

제1절 탄소중립도시 계획 및 지원

제332조(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공간의 에너지 효율화 및 시민 인식 개선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도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남부산통합특별시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한 사업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조성·확충 사업
3. 도시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사업
4.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활용 사업
5. 통합특별시 관할 항만 및 해양구역의 블루카본(해양 탄소흡수원) 확충 및 선박 탄소배출 관리방안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 전환과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탄소중립 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3조(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탄소중립도시 사업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산하 시·군·구 단위 및 탄소중립도시 내 지역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②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실시하며, 국가 기후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관련 요소 분석: 온실가스 배출량, 토지이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 등
2. 인구 현황 및 산업구조 분석: 주민등록 인구수, 인구밀도, 산업별 종사자 수 등
3. 도시 기반시설 및 에너지 이용 분석: 도시지역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 현황, 에너지 소비량, 재생에너지 비율 등
4. 기후재해 취약성 분석: 폭염·홍수·해수면상승·가뭄 등에 따른 기후재해 노출도, 기후재해 민감도, 기후위기 적응 능력 등
5. 지역산업의 탄소집약도 및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현황 분석
6. 연안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해양 생태계 탄소흡수량 조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4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관할구역 내 시·군·구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을 직접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탄소중립 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2. 도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거나 개선하는 사업
3.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의 조성
5. 그 밖에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탄소중립 시범사업, 녹색기술산업 및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활성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탄소중립 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35조(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기후위기 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적응센터는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통합특별시장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며, 국가 기후데이터의 활용 권한을 적응센터에 부여하여야 한다.

제336조(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3.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5.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337조(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통합 이전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관할 내에 지정·운영 중이던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하여, 통합 이후에도 기존 기능과 역할이 유지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통합 이후 지원규모가 종전의 합계액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338조(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녹색산업 등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1.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2.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클러스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산업등의 연구 및 기술 개발

2.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촉진 및 시장

진출 지원

3. 녹색산업등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

4. 그 밖에 녹색산업의 육성 및 집적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9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① 통합특별시는 정부에 「탄소중립기본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별지구"라 한다)로 우선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거나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의 권한으로 하고, 통합특별시는 특

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2. 실업 예방, 실업자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
3.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4. 고용 촉진과 관련된 산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산업 및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금융상 지원 조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 조치

③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사유가 소멸하는 등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40조(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는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경남부산통합특별시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시·군의 부담

금

3. 기금 운용 수익금

4. 정부 보조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그 밖의 수익금

③ 정부는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2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 규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지원 범위 및 대상 사업 선정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통합특별시장이 기금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운영

2.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지역 영향 분석

3.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고용 승계, 재취업 훈련, 취업 알선, 전업

지원금 등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전환과 관련된 사업

4.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의 기업 유치, 소상공인 지원, 주민 복지 등을 위한 사업

5.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의 발전 설비 및 부지의 해체, 복원, 활용을 위한 주민 프로그램 등의 개발 지원

6. 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운영

7.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지원

8.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9.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10. 그 밖에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⑥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절 에너지 전환 및 재생에너지

제341조(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통합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가 재생에너지 및 성장 유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에너지 자립도시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③ 통합특별시장은 에너지 자립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2조(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육성에 관한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탄소 포집·이용·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의 개발·실증, 산업 집적화 단지 지정,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공동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탄소 저감 기술의 상용화,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역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을 포함하며, 그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3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및 에너지 전환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7조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의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44조(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및 시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및 시범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 지원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및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45조(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및 발전시설 설치) ① 통합특별시

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 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조례로 관리 방식 및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개발, 산업 육성, 발전시설 설치, 발전지구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발전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변 지역에 대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346조(히트펌프 등 에너지 효율화 설비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재생에너지 이용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히트펌프 및 그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히트펌프 및 부대설비의 성능, 에너지원의 종류 등에 따라 지원 금액 및 내용을 차등할 수 있으며, 지원 및 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기준·절차·방법 등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추진하는 히트펌프 및 관련 부대설비의 보급 활성화와 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47조(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다른 지역의 신청보다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특화지역 내에서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LMP)를 적용할 수 있는 요금 결정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9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해당 변경 또는 계획 내용 및 지정·변경 결과를 지체 없이 문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8조(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의 산업 발전계획, 어업권의 손실보상 및 지역주민 수용성, 환경·경관적 특성 등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49조(해상풍력 발전지구 내 면허어업 및 어업허가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산업과의 상생공존을 위하여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지정된 공유수면에서 「양식산업발전법」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설치·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업(면허에 한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공유수면에서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식업 및 어선어업의 허용 기준, 대상해역, 어업의 종류, 안전관리 및 조업 제한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0조(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항만법」 제3조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항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항만시설 수급전망, 항만물동량 수요예측 등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이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관

리·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신속히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지구·발전지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특별시 내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351조(수상태양광 산업 육성) ① 국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수상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수상태양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실증사업, 사업화 지원, 전력계통 연계 제도 개선 및 관련 인허가 절차의 합리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수상태양광 등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의 참여와 수익의 일부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352조(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해당 녹지의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제353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에서 분산에너지원과 수요처 간 전력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구축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라 한다) 내에 전력수요 유치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선사업자에게 송전·배전설비 등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통합특별시 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축사업으로 확충된 전력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수요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망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54조(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특례)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보급으로 전력계통 포화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통합특별시의 지역에 대하여, 전력계통 안정화 및 추가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송전·변전설비 확충, 계통관리설비 구축,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 종합적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을 확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사업자와 협력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계통포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 및 관계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355조(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연계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계통안정화 장치(이차전지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포함한다)가 일반적인 발전설비와 달리 추가적인 설비비용 및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절 에너지 이용 및 수소산업

제356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특례)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발전용량 4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해상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해당 사업에 필요한 송전선로·부대시설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원상 회복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상 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풍황 계측

기 설치 및 지반 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통합특별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357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에 관한 특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통합특별시가 해당 허가 구역 또는 그 인접 해역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경우에는 징수된 점용료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80을 통합특별시의 수입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 수입 중 일부는 공유수면의 보전·복원 또는 공공용 인프라 설치에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 용도 및 배분 기준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58조(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수소산업”이라 한다)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수소산업 육성·지원
2. 지역의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 및 활성화
3. 그 밖에 수소산업으로서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9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및 제108조제3항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및 제52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발전 용량이 40,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발전사업 중 발전 용량이 3,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인가 등에 앞서 통합특별시장 소속의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설치, 구성, 심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에 한정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정한 사항 외에도 풍력 발전사업에 관하여 지역 여건 및 입지 특수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60조(전기요금 차등 적용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전기사업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내에서 생산되어 동일 지역

내에 공급되는 전기에 대하여는 이용 요금 및 이용 조건을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통합특별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요금 차등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 요금 및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약정을 작성하는 경우 미리 통합특별시장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361조(수소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 실현 및 수소경제 사회 촉진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수소 특화 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선하여 수소 특화 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는 수소 특화 단지 내 전기 수요자와 직접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 특화 단지에 대하여 기반 조성, 수소산업 체계 육성, 안전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362조(수소 제조설비 등 설치 특례) ① 통합특별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수소 제조 설비 및 관련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구조·설

치하는 기준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설비 및 시설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순환자원시설 또는 에너지 회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 기준 및 처리 가능 대상은 통합특별시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제5장 전통산업 진흥 및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제1절 농·축산업 및 스마트농업 지원 특례

제363조(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88조의 투자진흥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해제 면적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과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권한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

다.

③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6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농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65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66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지법」 제37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

1. 통합특별시의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통합특별시에 지정된 농촌활력촉진특구의 농업진흥지역 및 농지

전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3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67조(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농업·농촌 발전기금을 설치·운용 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재원 및 용도 그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되,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보전·조정·지원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68조(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태풍 등 기상재해로부터 관할구역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풍속, 강수량, 기온 등 「기상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로 산출한 지수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재해 지수보험(이하 “지수보험”이라 한다)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수보험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수보험 적용 대상 작물 및 기상 지수의 설정

2. 기상기후데이터의 확보 및 기상 지수의 객관성 검증 방법

3. 지수 구간별 보험금 지급 기준 및 요율 산정

4. 보험료 지원 및 재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지수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남부산 농업재해 보험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수보험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상품 심의 및 승인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본다.

⑤ 국가는 지수보험 운영에 필요한 기상청의 기상기후데이터 및 국립농업과학원의 관련 인프라를 통합특별시장에 제공할 수 있다.

제369조(농업인 기준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기준을 통합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업인 기준을 달리 정하여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이에 따른 재정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예산을 활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운용방안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70조(청년 농어업인 연령 특례) ①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청년 농어업인의 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조정된 청년 농어업인 연령에 맞추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용 대상, 지원 기간 및 절차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71조(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수급 대상자의 자격 기준, 수급 조건, 연금액 및 수급 기간 등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해당 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72조(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농업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육성지구 조성계획 수립 및 고시는 통합특별시장이 하며, 지구 지정 요건, 범위, 추진 절차 등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해당 지구의 농업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

발, 스마트농업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73조(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특례) ①「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에서는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 또는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통합특별시장이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산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 스마트농업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마련하거나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74조(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서 그린바이오산업의 연구·실증·산업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

장이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수행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5.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관리·활용을 함에 있어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정책, 데이터 정책, 표준, 보안체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75조(농업 분야 재정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이 법에 따라 농업 관련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정적 여력 또는 정책적 효과가 농업·농촌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여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우선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 개선

2. 고령농업인 및 영세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보호

3. 농촌 지역의 복지 증진 및 농업 인력 확보·지원

제376조(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촌활력촉진특구(이하 “촉진특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인구감소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응하여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

2. 도로·철도 등 교통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할 만한 잠재력을 보유할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통합특별시장은 촉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촉진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촉진특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촉진특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촉진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촉진특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⑦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촉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통합특별시장은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촉진특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⑨ 촉진특구 내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변경허가·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377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촌융복

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제378조(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의 선진화 및 지역별 유통망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른 관내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통합특별시의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사용료
3. 기타 기부금 및 후원금 등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도매시장, 공판장 및 종합유통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79조(국가식품수출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하여 국가식품수출클러스터를 지정 및 조성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식품수출클러스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및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380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제3호·제5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수의로 위촉한 수의사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381조(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동물보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물의 보호·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3.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및 판촉
4.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5.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82조(학교·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서 학교·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단순 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국가·공공기관이 통합특별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공공기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품질 좋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이 국가·공공기관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3조(귀농어·귀촌 활성화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귀농어·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 청년의 농어촌 취업 및 창업 지원
2. 귀농어·귀촌 청년의 정주여건 지원
3. 귀농어·귀촌 청년의 능력개발 및 생활 안정 지원

제384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관한 특례)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간척지 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토지보전조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 감면 여부는 사업의 공익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와 통합특별시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절 수산업 진흥 및 어촌 육성

제385조(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지역 수산식품산업 진흥계획 수립, 수산식품 가공·유통 지원, 지역 특화 브랜드 개발·육성 등 지역적 특성에 한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국가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제4항,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7조의12제3항 전단, 제37조의13제2항 및 제37조의15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양식장 관리, 수산질병 예방 및 대응, 지역별 자원관리계획 수립 등 지역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60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그 집행에 있어 전국 단

위 표준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산업법」 제81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해당 권한의 행사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조정을 거쳐야 하며, 수산업 관련 단체, 어업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중앙정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수산자원 관리 및 산업 육성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⑦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업법」 제4조제3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 해역에서 수립되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⑧ 통합특별시장은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승인 및 면허 처분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시행한다.

1. 개발계획 신청의 접수 및 검토

2. 개발계획의 승인

3. 면허처분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및 최종 허가 통보

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조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 수산자원 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

2. 해양환경 보전 및 어선안전 확보에 필요한 국가 단위 규제

제386조(수산발전기금 지원 특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유통 발전 협의회를 통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수산발전기금 운용관리 요령」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통합특별시 수산업의 지속적인 영위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 적체물량 해소 및 가격안정을 위한 수산물 정부 비축·수매 자금 지원
2. 수산물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지원
3. 그 밖에 어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87조(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 선도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보에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도지구 지정 및 선도지구 조성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선도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수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 수산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 수산업 교육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8조(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의 수산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이 연계되는 종합 산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하여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 및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이하 "전문단지등"이라 한다)를 지정·조성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전문단지등의 조성을 위하여 수산식품 가공, 연구개발, 유통, 창업 기능이 집적된 산업단지 조성을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또는 부문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단지등의 조성에 필요한 입지 확보, 인허가, 사업 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9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특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40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할구역 내의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본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90조(월동구역 및 월하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저감 및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8조 및 제23조에 따른 해상국립공원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해상국립공원 구역 안의 일정한 수면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 보전 및 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91조(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조건불리지역에서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신청 절차,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 및 범위는 통합특별시와의 협의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어업인 단체, 관계

전문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공개하여야 한다.

제392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제21조 및 제2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수산종자의 생산·유통·품질 관리 및 기술 개발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수산업법」 제4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어업(근해어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은 시험어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15일 이내에 협의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수산업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시험어업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는 시험어업의 안전 기준, 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 및 사후 관리 절차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시험어업 결과 및 수산종자산업 육성 성과를 매년 통합특별시의회와 관계 기관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93조(시험양식업의 특례) ① 「수산업법」 제46조제2항 후단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계 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직접 시험어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시험어업과 관련하여 관계 연구기관 및 어업인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신규 어종 개발, 양식 기술 검증 등 지역 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험어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시험어업을 실시함에 있어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안전 기준을 미리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94조(낚시어선의 이용에 관한 특례)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지역 실정에 맞는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낚시어선의 안전 관리 및 전국적 통일 기준이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95조(유어장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른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및 채취 방법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 기준, 유어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 및 채취 방법·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절 푸드테크산업 진흥

제396조(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절차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의 의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 및 사유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공동협의회를 개최하여 조정한다.

1.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 및 정책의 기본 방향
2. 푸드테크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 전망
3. 푸드테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4.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실증 지원
5.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6.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7. 그 밖에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세부 추진 과제, 핵심 성과 지표(KPI) 및 달성 목표
2. 재원 조달 및 투자·집행 계획
3. 혁신클러스터 및 전담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및 역할 분담
4. 전년도 성과 평가 및 차년도 이행 보완 계획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제3호의 통계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표, 자료 수집 및 공개 범위,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품질 관리 기준을 정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 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성과 평가 및 공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97조(푸드테크산업 혁신클러스터 지정 촉진) ① 정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에서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이하 "혁신클러스터"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추진하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혁신클러스터의 지정 및 고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 개발, 실증 및 검증, 표준 및 인증, 규제 특례, 창업 및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 지원
2. 공공 인프라(시험 생산, 공유 장비, 식품 안전 및 위해 평가, 스마트 제조 등)의 구축 및 운영
3. 공공 및 민간 투자와 연계한 펀드 조성 및 금융·세제 지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혁신클러스터의 지정 기준·절차·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혁신클러스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통합특별시가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 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 매년 1회 이상 추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39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혁신클러스터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8조(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통합특별시장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 조사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통계를 작성·관리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정보를 연계·공유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의 범위 및 방법, 개인정보 및 영업 비밀 보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99조(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에 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6항, 제8조제4항, 제13조제6항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규정된 정부의 권한 및 의무는 통합특별시의 권한 및 의무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권한 중복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400조(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푸드테크산업과 관련하여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직접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행위는 통합특별시장의 행위로 본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된 요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5편 시민의 삶의 질 제고

제1장 주민 행복 증진

제1절 사회보장·보건·청년 등 지원에 관한 특례

제401조(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를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돌봄, 주거, 보건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 소득보장 등 국민의 기본적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의 추진 범위, 대상, 절차, 재원 조달, 전달체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진되는 기본사회 관련 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추진 성과는 향후 기본사회 관련 국가 정책 및 제도 설계에 참고·반영할 수 있다.

제402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출산장려, 인구부양, 돌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국가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3조(저출생 대응 특별기금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저출생 대응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출생 대응 특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시 같은 법 제2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인구구조와 저출생 대응 필요성을 우선 고려하여

포괄 보조하고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특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3. 통합특별시 일반회계 출연금·기부금 및 후원금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입되는 금액

④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특별기금은 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출산·돌봄·주거 지원 등 저출생 대응 관련 사업에 사용한다.

제404조(지역돌봄특구 지정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영유아,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돌봄특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돌봄특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돌봄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지역돌봄특구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기존 돌봄사업과 지역돌봄특구 운영 간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돌봄특구 내에서 시행되는 돌봄사업과 「유

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 간의 연계·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기존 돌봄사업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05조(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주민 기본생활 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농업인
2. 지역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및 시민
3.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와 평생학습권 보장을 통하여 지역의 인적자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평생학습 참여자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또는 관련 국가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금액 및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406조(사회복지시설의 통합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사회복

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407조(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청년 유출 방지 및 지역 유입·정착 촉진을 위하여 「청년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의 청년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주거 및 문화 향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기준·규모 및 집행 절차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 청년 일자리 확충
2. 청년 주거공간 지원
3. 기초생활 인프라 및 문화·집회시설 확충

제408조(청년발전기금의 설치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청년의 고용 촉진, 주거 안정, 복지 증진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부산통합특별시청년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2.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복지 시설 확충 사업

4. 청년의 지역 사회 참여 확대 및 교류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청년의 권익 증진 및 발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업

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는 통합특별시장이 담당하되, 그 밖에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409조(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청년창업 활성화와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2. 통합특별시 일반회계 출연금, 기부금 및 후원금

3. 산업진흥 및 창업 지원 관련 특별회계 전입금 등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입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및 창업 인프라 구축 지원
2. 청년창업기업의 연구개발 및 판로지원
3. 청년창업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4.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청년창업기업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0조(청년 일자리 구축에 대한 특례)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청년기본법」 제17조에 따라 통합특별시 지역 여건·문화 등 특색에 맞는 특화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 시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지원 시책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411조(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 ① 국가는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음성, 동작, 뇌파 등으로 제어 가능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를 보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내 모든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에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수어 통역 및 시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2조(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서 "공공의료 인프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인력·사업을 말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책임의료기관과 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연계체계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축·증축·이전, 노후시설 개보수 및 의료환경 개선 사업
3.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중증·응급·분만·소아·정신의료 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별 전문의료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재난·응급의료, 필수의료 제공,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병원 및 관련 기반시설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안정화 및 장비·인력 확충 기반 사업
6.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장기 근무 유도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연구·생활기반 등 지원 사업
7.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에 편입·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인력
8.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통합특별시 소재 지역암센터의 시설·설비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 책임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각각의 지역에

제공되던 응급·필수·공공의료 관련 국가의 재정지원 및 정책지원은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국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의료취약지의 병원 운영비 지원과 지역의사·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⑦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종합병원 개설과 연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413조(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소재하는 지방의료원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로 고시된 시·군·구에 지방의료원을 설립(신축·이전·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414조(대형 의료기관 추가 개설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에서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면제한다.

제415조(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416조(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및 취약지역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필수·공공 의료 인력의 안정적·지속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광역 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의료재단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공공의료재단의 설치, 조직 및 운영, 관련 민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417조(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응급의료 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 지원

3. 응급의료 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 지원

4.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

제418조(국립광역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합특별시 관할 국립대학교를 대상으로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설치 추진 과정에서 의과대학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19조(국립·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국립·공립 정신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20조(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및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종전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출산율 제고와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421조(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경찰관서, 교육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조직, 인력 운영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절 지역경제·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특례

제422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통합특별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점가 활성화 지원
2.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3. 주말 시장 지원
4. 문화관광형 시장 지정·육성·해제
5.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 지원
6. 청년상인 육성
7. 빈 점포 활용 촉진
8. 상권 활성화 지원
9.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10.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통합특별시 내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423조(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4조(국유지·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유지·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10년간 감면할 수 있다.

제42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 지상 설치 지원 특례) ①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전용 주차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또는 지하 시설의 지상 이전 설치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6조(「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 ① 제595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국민건강에 미치

는 영향을 검토·평가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협의에 관한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427조(물순환 촉진 및 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포함된 사업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28조(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로 인하여 경영환경의 변화, 상권 구조의 재편 및 지역 간 경제 여건 격차 등으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기존 소상공인 지원제도와의 연계 범위 내에서 금융적·정책적 지원 특례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 및 같은 조 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3. 소상공인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제 취약지역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과 비교하여 소상공인의 금융·경영 여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는 통합특별시 지역 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유통·할인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에 따라 추진하며,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42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전통시

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부산통합특별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통합특별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430조(지역순환경제 시민참여 디지털 생태계 구축)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경제의 자립적 순환구조를 강화하고 지역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 기반의 지역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순환경제 생태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한다.

1. 통합특별시 디지털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체계

2. 지역 공공자산의 시민 참여형 운영 시스템

3. 지역기업·소상공인 거래 지원 디지털 플랫폼

4. 시민 참여형 지역개발사업 공동투자 플랫폼

5. 공익활동 참여 포인트 적립 및 보상 시스템

6. 지역 데이터 경제 활성화 플랫폼

제2장 도시공간 재편 및 교통체계 구축

제1절 국토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제43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이 수립하는 통합특별시 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통합특별시 종합계획으로 본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승인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이 제2항에 따라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제3항에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승인·변경된 것으로 보며,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승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거나 승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과 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할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의 명칭·지정목적, 건축 및 행위의 금지·제한 등을 별도의 용도지구로 지정·변경할 수 있다.

⑥ 통합특별시에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중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결정·구조·설치 기준, 건폐율·용적률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⑦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9조, 제29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구역의 지정·변경,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규정된 것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중앙정부 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하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제432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1

조, 제12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는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훼손지 복구계획의 수립 및 승인
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승인
4.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협의
5.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징수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된 보전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용도는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구를 포함한 광역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2-1. (2)의 환경평가

등급 1~2등급지도 포함할 수 있다.

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대상지 제척기준 중 연담화에 관한 사항은 광역 생활권 형성, 지역균형발전 또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3조(개발제한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특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434조(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특례) 통합특별시 내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행위제한의 범위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도시개발·주택 및 정비사업

제435조(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법」 제4조, 제69조제1항, 제71

조, 제72조, 제77조제1항 및 제2항,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건축법」에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에 따라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건축허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개별 심의를 갈음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심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5.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통합특별시장은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

1. 「경관법」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장이 추천하는 1명 이상의 사람

2. 제3항제4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필요한 건축물을 심의할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

3. 「건축법」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1명 이상의 사람

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에 대한 검토·심의·조사·협의·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심의 결과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각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⑥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에 관한 세부절차와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정 및 갈등관리 절차,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436조(공공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기본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행정권역에 관한 공공건축 디자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통합행정권역에 대한 공공건축 디자인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디자

인 기준이 적용된 공공건축물의 조성을 위해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437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 제5조제5항, 제8조제3항(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의2제4항 전단·후단, 제32조제6항, 제58조제2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시개발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사업방식, 공공기여, 기반시설 설치, 단계별 개발 관리 등 지역 여건과 관련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 이윤율 상한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초과이익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3조의2에 따라 지역 내 재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38조(개발행위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제439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통합특별시 귀속분에 한정한다), 제7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40조(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우선 적용 및 경과조치)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 이후의 개발·보전·재생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농촌·해양·도서를 포괄하는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을 수립·고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이 수립·고시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정비·기반시설 사업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 전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각종 공간·도시 관련 계획은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수립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되,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 고시 후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합성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제441조(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택지개발지구에서의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442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①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6항, 제49조제1

항, 제65조제2항, 제93조제1항 및 제96조,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택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거기본법」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주거종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43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17조,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통합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통합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제444조(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조 제1호의2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청년 및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특별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항
3.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 거절에 관한 사항

제445조(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1인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입주자의 특성 및 주거 수요에 대한 맞춤형 공간구성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에 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이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통합특별시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임대조건,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기준, 운영기관의 선정·평가 및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46조(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가정어린이집 임대 기간을 최대 9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보육수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준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7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통합특별시장은 「주택법」 제57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통합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 더 이상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48조(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제449조(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제 요청은 통합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50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같은 조 제4호·제5호, 제3조제5호, 제5조제1항제1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12호,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제1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제7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4

조제3항 단서,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3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9항·제10항, 제36조제3항·제4항, 제37조제2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10항 단서, 제46조제4항·제5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50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52조제1항제13호, 제55조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1조제3항 전단, 제65조제1항 단서,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4항제3호, 제6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9호, 제76조제2항, 제7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단서, 제8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

2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4항, 제92조제2항제1호, 제94조제1항·제3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101조제1항제2호,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3조제5호, 제106조제2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6항, 제110조제1항제4호, 제111조제1항, 제113조제2항 후단, 제1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7조제1항제3호,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제7호, 제123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3호,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제4호·제6호, 제1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1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군사시설·지명 및 기타 관리

제451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부대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으며, 관할 부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관할 부대장은 제1항에 따른 건의가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통합특별시 또는 시·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원 및 연구원

④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52조(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특례) ①「국유재산법」 제13조, 제55조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이전사업 기부재산 가액이 양여될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여야

하고, 양여재산 가액이 기부재산 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은 대체시설 가액산정 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기부재산의 가액은 토지 등 매입과 대체시설의 공사비, 부대비, 자본비용 등 실제 투입된 모든 금액을 고려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되, 사업시행자가 실제 투입한 비용 이상이어야 하며 양여재산의 가액은 종전부지 활용사업 계획이 반영되지 아니한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되어 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훼손지 복구계획의 수립
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3.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의 적용
4.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1등급 및 2등급지의 원형보존 및 신규지정에 관한 기준

④ 통합특별시장은 군 종전부지와 그 주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토지의 용도 및 밀도 계획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

시조례로 정한다.

제453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① 국방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통합특별시 안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54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방법)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및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부장관이 해당 지상물에 대하여 매각 등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 다만 처분할 예정인 지상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및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및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3.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또는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4.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또는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또는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거나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 상태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455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유(활용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다)가 없는 한 무상양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하

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④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통합특별시 또는 관할 시·군·구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위생·방화 등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제456조(지명의 고시 등에 관한 특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제5항 및 제91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지명의 결정·변경 및 폐지는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결정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7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건축물의 종류별 규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절 광역교통망 구축 및 기반시설

제458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가목의 "광역도로"에는 통합 이전의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에 걸치는 도로가 포함되며, 나목의 "광역철도"에는 통합 이전의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에 걸쳐 운행하는 도시철도 및 철도가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정한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시설 설치 및 건설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국고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광역교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국고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통합지방자치단체의 조기 안착을 위하여,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절차가 진행 중인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59조(통합특별시 도로사업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경제거점 조성 등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도로사업을 국가계획에 우선 반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에 연계되는 도로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광역도로
3. 「도로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혼잡도로
4.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도로(통합특별시 설치 이전 경상남도의 지방도를 포함한다) 중 투자진흥지구, 산림이용진흥지구 등에 연계되는 도로. 다만, 「도로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 한정한다

5. 「도로법」 제11조에서 지정받은 고속국도

6. 「도로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원 지방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국고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합특별시 도로사업의 시행계획 수립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절차가 진행 중인 고속국도, 광역도로 건설·개량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60조(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 관련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도로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인정하여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국비 지원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통합특별시의 광역단위 행정통합 이전의 경상남도 동(洞) 지역에 있는 도로의 혼잡도로 개선

2. 통합특별시의 광역단위 행정통합 이전의 부산광역시 동(洞) 지역에 있는 도로의 혼잡도로 개선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이 수립되면 통합특별시장이 시행하는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설계·보상·공사를 포함한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된 도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국고를 보조할 수 있다.

제461조(광역철도 사업 관련 특례) ① 광역철도 사업의 경우 통합특별시의 대도시권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제458조제2항을 적용하며, 통합특별시의 광역단위 행정통합 이전의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걸쳐 운행되는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시행하는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설계·보상·공사를 포함하여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에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광역철도의 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중 화물을 운송(화물의 취급을 포

함한다)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④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 중 인구감소지역을 경유하는 광역철도 노선의 경우에는 원인 제공자의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또는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 운임·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이용 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제462조(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 ① 국가는 제28조에 따른 광역생활권, 산업단지 등의 경제권과 주변 도시와의 연결성 강화 및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통망을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광역생활권, 산업단지, 관광지 간 교통 개선을 위한 도로 및 철도의 신설·개량
2. 통합특별시의 동해안 및 남해안과 서부권·북부권을 연결하는 외곽순환망 구축을 위한 도로 및 철도의 신설·개량
3. 기존 광역순환망의 개량 및 확충

제463조(통합특별시 도시철도 사업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도시철도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법」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할 수 있다.

제464조(초광역 교통사업을 위한 재정 특례) ① 국가가 계획·결정하는 광역급행철도 등 초광역 교통사업의 연장 또는 확대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가 부담한다.

제465조(고속철도·혼잡도로·고속국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고속철도·혼잡도로·고속국도 건설 사업의 신

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국가균형발전과 연계된 사업
2. 국가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사업

제5절 교통 재원 및 민간투자

제466조(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고속도로 및 복합환승센터 건설 예정 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 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변 토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
5. 관련 법령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개량·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시민 경제 안정 등을 위하여 동결되는 통행료에 대한 보전 비용

7. 「탄소중립기본법」 및 「유료도로법」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또는 장애인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통행료 감면 비용

8.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손실비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제1항 이외에도 사회기반시설의 공공성·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 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해당 점용 허가권자에게 점용 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 허가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67조(민간투자사업의 비용부담 및 재정지원)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지역소멸 위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역사(「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다), 인터체인지 신설 등의 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

제468조(민간투자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지역소멸 위기 지역의 민간투자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환경 보전 목적의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1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의 범위 및 기준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되, 지역소멸 위기 지역의 투자 촉진, 환경 보전, 교통수요 관리 목적 간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69조(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수

입금을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②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계정 간 재원 배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 특별회계의 수입금을 통합특별시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국가 도로·철도망 계획에 따른 국비 투자 계획과 관할구역 내 수입금을 추계하여 그 규모를 상호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도 및 철도의 관리청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조례로 통합특별시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및 공항계정을 신설·운용한다.

제6절 도시교통 및 여객운송 지원

제470조(노면전차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내 시내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를 말한다) 및 간선급행버스(「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간선급행버스를 말한다)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가 설치된 경

우 대통령령 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안전 기준에 따라 해당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제471조(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서 운영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용 차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가는「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내 대도시권 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전용차량 도입 비용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72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내 간선급행버스(「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간선급행버스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통합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7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 제20조의2, 제22조의2, 제23조 및 제25조에 규정된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전단, 제14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15조제4항 본문,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20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11항 후단, 같은 조 제12항 전단, 같은 조 제13항, 제22조의2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4조의2 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제9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 본문·단서, 제27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74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 ① 사업구역이 통합특별시에 한정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3, 제49조의5부터 제49조의7까지, 제49조의13부터 제49조의15까지, 제49조의18 및 제49조의19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9를 적용한다.

제475조(여객자동차플랫폼사업자 재정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여객자동차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2.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3. 그 밖에 여객자동차플랫폼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76조(여객자동차플랫폼사업자 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75조에 따

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475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75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477조(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① 통합특별시 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운임·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운임·요금을 정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는 간소화할 수 있다.

제478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의 종사자는 서비스 수준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지되는 행위의 기준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중 지역 여건상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보완할 수 있다.

제479조(택시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사업구역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이 고속철도역, 공항(「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만 해당한다), 항만(「항만법」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이 포함된 사업구역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사업구역 지정 및 변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80조(대중교통 운영 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을 걸쳐 운행하는 버스·광역철도·도시철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 벽지노선 운행, 철도 공익서비스제공 등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 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노후시설물(도시철도 차량을 포함한다)의 개체·개량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도시

철도법」 제2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100분의 70 이상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대중교통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경유하는 광역철도 노선에 대하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원인 제공자의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 운임·요금을 감면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경우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유지하여 발생되는 경영손실에 따른 비용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⑤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지역 간 이동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

통수단의 운영 및 도입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및 상담원 인건비

2.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에 필요한 비용

3.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등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제481조(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구 집중, 도시기능 재편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주차장법」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조성·확충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82조(복합환승센터 조성 지원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경우 국가 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83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운영 및 자율주행차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자율주행자

동차 시범운영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합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증, 상용화 및 공공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자율주행 실증, 상용화 및 공공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해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인 자율주행 운행 지원
2. 유상 여객·물류 서비스 운영 지원
3. 운행손실 보전
4.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5. 기반시설 구축

⑥ 통합특별시장은 자율주행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84조(미래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① 국가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의 일부 지역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우선 지정하고, 실증·상용화·확산이 연계된 미래 모빌리티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기반시설 구축, 실증사업, 서비스 확산 및 운영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에서 추진하는 실증사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실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실증사업의 결과가 공공 및 민간 서비스 도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미래 모빌리티 관련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⑥ 통합특별시의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⑦ 국가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에서 추진하는 미래 모빌리티 관련 기반시설, 운영체계, 관제 및 지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5조(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이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에 따라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통물류거점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요청 절차,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균형발전 활성화

제486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방식 자율성 강화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인구감소지역등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7조(지역특화산업 선정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특별시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의 지역적 특성 및 산업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488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신청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이 신청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요청받은 경우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되 통합특별시 요청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89조(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90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기회발전특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를 지정·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은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절차,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491조(산업단지 내 기회발전특구 면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신규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경우 그 면적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면적은 조성 면적의 100분의 25 또는 산업시설 용지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제2항의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2조(산업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내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93조(혁신도시의 우선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이 신청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되 통합특별시 요청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94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우선 지정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지구·단지·특구의 일부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우선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

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되 통합특별시 요청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95조(혁신도시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 제503조에 따라 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혁신도시의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하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종전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에 준하여 혁신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96조(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로 지정된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혁신도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혁신도시예정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있어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97조(경남부산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지역 간 격차와 동일 생활권 및 지역 간 경쟁적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연계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남부산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73조에 따른 국세 교부에 따른 특례로 확보되는 재원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경남부산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498조(경남부산상생협력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 및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하여 권역별 상생협력기구를 설치한다.

② 상생협력기구는 주요 산업·교육·복지·교통 등 권역별 공동현안을 심의·조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상생협력기구의 협의 결과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상생협력기구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499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내 개발구역을 준주거지역·상업지역 등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을 국토교통부고시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공공시설 확보 등 공공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00조(역세권 개발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① 국가는 역세권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임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임대 기간 종료 시에는 해당 시설물을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501조(지역역세권 활성화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은 역사와 역사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역사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철도사업자(「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를 말한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철도경제권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통합특별시 및 철도사업자는 철도경제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502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재생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되 통합특별시 요청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03조(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배정) ① 국가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 구축을 위하여 통합특별시로의 우선 이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지원을 위하여 종전 경남 및 부산에 배정된 기관 수의 2배 이상의 이전기관을 배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른 이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04조(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수당의 지급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

법」 제29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인재채용 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상향 적용할 수 있다.

제505조(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설치 특례)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조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절차는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제506조(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507조(통합특별시 내 낙후지역 발전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격차해소를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는 관련 시책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문화·관광의 진흥 및 해양중심지 조성

제1절 문화예술·문화유산·체육·콘텐츠 진흥

제508조(문화예술의 진흥)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종합계획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과 계획
2.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확충·정비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예술의 발굴·진흥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 증진과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통합특별시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를 준용하여 통합특별시의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병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통합특별시 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진흥계획 중 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이 반영된 부분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09조(지역문화 진흥기반의 조성)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3제1항, 제13조의4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등에 따른 지정과는 별도로 지역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의 문화도시 지정과 별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지정한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로 본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통합특별시가 지정한 문화도시의 육성을 통하여 주민의 지역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문화도시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제510조(문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이 집적된 지역
2. 군사시설 이전이 확정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내 교양시설이 설치된 지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11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향토문화의 발굴·유지·보존 및 계승·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통합특별시는 향토문화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도로·용수시설·하수시설·통신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512조(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 문화산업진흥 및 기업 유치, 입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3. 문화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한 각종 사업의 진흥
4. 문화산업진흥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13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514조(문화재생 특별회계 신설) ①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장이 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유휴공간 및 시설 등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문화재생특별회계 계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15조(문화진흥기금 설치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예술의 융성과 문화 인프라 확충 및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문화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기금운용 수익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 특화 예술 축제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

2. 지역문화예술인 창작·제작 지원사업

3. 통합특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

4. 기타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진흥사업

④ 이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년으로 하되,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조성된 문화진흥기금이 있는 경우 그 기금은 이 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문화진흥기금과는 통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목적과 운용체계를 유지하면서 별도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제516조(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시설·전시컨벤션 시설·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화예술회관·대규모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인허가 등을 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17조(국제미술품 거래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글로벌 미술 시장의 거점 육성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일부를 국제미술품 거래 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제미술품 거래 자유구역 내에서의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외국환 거래에 대하여 신고 의무를 완화하거

나 면제하는 등 필요한 금융상의 특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18조(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평가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의2에도 불구하고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토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519조(체육시설의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주민 생활 체육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시설을 통합특별시에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의 유치 및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국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20조(가야문화예술 중심도시 조성)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가야문화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통합특별시장이 개최하는 국제적 규모의 가야문화 관련 공연·역사·전통·문화예술·관광 축제가 육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의 가야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국립가야문화시설 및 관련 교육기관의 설립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가야문화의 보존·전승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국립가야민속촌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21조(역사문화 특구의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역사적 정체성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역사문화거점으로서 통합특별시 내 일정 지역을 역사문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구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및 전통문화의 체계적 보존·전승

2. 역사문화 자산과 그 정신적 가치의 보호 및 활용

3. 무형유산·전통예술·민속문화의 집적 및 활성화

4. 역사문화 기반 관광·교육·연구 기능의 강화

④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22조(역사문화특구에 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구의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자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는 특구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특구에 적용되는 특례의 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3조(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통합특별시를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특별시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이스포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국제적 규모의 이스포츠 대회 및 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24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7조제3항 및 제9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제2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0조,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1항제5호,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제67조제6항, 제68조제1항, 제88조, 제89조제2항 및 제9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25조(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5항, 제9조의3제1항·제2항·제5

항·제7항, 제9조의5제1항·제2항 및 제3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9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뉴스통신 등록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6호, 제9조의4제2항, 제9조의5제1항 및 제3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26조(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39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27조(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과학기술·디자인·문화예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복합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차세대 이동통신망, 초고성능 컴퓨팅 센터, 인공지능 창작 전용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산업단지에는 실감형 콘텐츠,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 게임,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미래형 문화기술 관련 기업을 유치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개발하는 인공지능 융합 콘텐츠 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문화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절 관광·마이스산업 진흥

제528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합특별시 관광개발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광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광개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29조(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관광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하며, 관광진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한다.

③ 국가는 전국 단위의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객 안전, 소비자 보호 및 관광 표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는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30조(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및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효력상실 및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68조부터 제17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531조(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농촌 관광자원, 해양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유원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을 인구감소지역 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2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8항,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및 제8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관광정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33조(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관광사업 투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갈음하여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 전용으로 한정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필요에 따라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투자계획서 등의 서류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장소·개시 시기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범죄수익 등 부정한 자금으로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허가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34조(국제관광특구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존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및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2에 따른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관광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관광특구 제도 신설 및 국제특구로 지정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국제관광 기능의 집적 및 전략적 기반 조성이 가능한 지역을 국제관광특구로 우선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제관광특구 지정 및 범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개발행위 허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요 인허가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는 관광특구 및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5조(국제행사 유치 지원) 정부는 세계박람회, G20정상회의, COP33, 유엔해양총회(UNOC), APEC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의 개최지로 통합특별시를 지정할 수 있다.

제536조(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내 시 지역을 국제회의도시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3. 국제회의 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 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 국제회의 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37조(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객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특구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 체류자격 및 변경, 체류 기간 상한을 달리하는 등의 출입국 절차를 통합특별시장 명의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드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요청 대상 및 절차, 회신 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538조(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콘텐츠 산업 육성과 국제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한류 콘텐츠 복합 공연시설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관련 법령에 따

라 건립 등에 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영상 제작 시설, 전시컨벤션시설 등 문화산업 관련 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건립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해당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단위개발사업지구로 보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사업시행자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제539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합특별시 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며,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관광진흥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광진흥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관광산

업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40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광 외화 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의 출연금

2. 제3항에 따른 전입금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특별시에 있는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을 포함한다)의 특허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통합특별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

제541조(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운용) 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통합특별시장이 관리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42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통합특별시 관광진흥개발기

금에 관하여 이 법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으로, “대통령령”은 “통합특별시조례”로 본다.

제543조(관광특구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진흥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협의 없이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및 변경할 수 있다.

제544조(권역별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별 의료 자원 특성에 맞춰 다음 각 호의 글로벌 의료관광특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1. 첨단의료권: AI 기반 정밀 의료, 중증 질환 치료, 뷰티·성형
2. 웰니스의료권: 해양 치유, 재활 의학, 한방 통합 치료
3. 산림치유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산림치유

② 통합특별시장은 특구 내에 국제진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환자의 입국부터 진료, 요양, 관광, 출국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며, 환자 및 보호자의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을 위한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

제545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사업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역 우수 관광사업체 지정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절 지속 가능한 해양 중심지 조성

제546조(남해안종합개발청의 설치 등) 정부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종합개발청(이하 “남해안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4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남해안청은 남해안권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남해안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남해안권 지역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수립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남해안권 도시계획, 강·섬 발전 및 특색화 사업, 숲 정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립공원 관리,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환태평양 관광휴양 거점구축, 광역관광개발 등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 해양 치유단지, 갯벌 자원화 등 해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6. 제23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도로·항만·공항·버티포트·연륙교·연도교·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8. 남해안권발전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9.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남해안권 인근 지역과의 문화·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1.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12. 연차별 재원조달 대책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남해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사항을 남해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남해안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548조(남해안관광진흥지구) ① “남해안권발전사업”이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개발지구”란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5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③ “남해안관광진흥지구”란 남해안에 있는 강·섬·갯벌·해안 등 해양자원과 문화·역사유산을 활용한 관광·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552조 및 제55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지구를 말한다.

제549조(남해안권발전사업 특별회계)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해안권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회계 세입금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전입금
2. 개발지구 임대사용료 등 수익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개발지구 내 토지 및 하천 이용 수익금 등

제550조(남해안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남해안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개발지구 상호 간 또는 개발지구와 외부 지역을 연계하는 광역기반시설(도로·철도·항만·공항·버티포트 등을 포함한다)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3. 제552조 및 제553조에 따른 개발지구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4. 남해안권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개발

5. 제556조 및 제557조에 따른 남해안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제558조 및 제559조에 따른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7. 남해안권발전사업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8. 개발지구 내 투자촉진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9. 해양자원을 활용한 휴양·레저·관광산업의 개발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0. 남해안권발전사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남해안발전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남해안청장

3. 관계 시·도지사

4.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남해안발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환경·해양·도시·문화 분야 전문가 등으로서 남

해안발전사업 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⑥ 남해안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국무조정실과 남해안종합개발청 소속 공무원 중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남해안발전위원회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남해안발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1조(남해안권 개발·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면제 특례제) 국가는 남해안권 개발·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552조(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남해안청장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

회(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할 필요가 있는 공유수면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50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발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축분야 위원 2명 이상이 참석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남해안권발전사업이 남해안 지역의 화합을 선도하고 경제축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2. 남해안권발전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3. 남해안권발전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4. 남해안권발전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②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개발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남해안권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개발지구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장의 개발지구 지정요청은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④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남해안청장이 지정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⑤ 통합특별시장에게 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지구의 지정·변경 요청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남해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지구를 지정·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할

때 지정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광역자지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에 개발지구의 규모, 지정 또는 변경 요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개발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하고, 개발지구가 지정된 경우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지구에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법」 제69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개발지구 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⑫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553조(개발지구 지정의 해제) ①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55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개발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남해안청장은 제552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제550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54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남해안권발전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개발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개발지구 지정 전의 용도지역·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남해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5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남해안발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남해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조성 토지 등의 처분계획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

② 남해안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5조(남해안권발전사업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55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협의·승인·허가·인가·신고·해제·심사·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5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0.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5.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2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

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2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24.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 등의 승인

27.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9.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0.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 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공원관리청의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한다)

3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3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4.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7.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발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 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40.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4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43.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인가·허가
4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 승인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인가·허가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거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남해안청장이 제55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556조(남해안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남해안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550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해안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남해안청장은 남해안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552조에 따른 절차 외에 다음 각 호의 협의 및 심의를 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협의하여야 하며,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를 포함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3.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③ 통합특별시장은 남해안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을 할 때에 관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종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남해안청장은 제3항에 따라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 및 종합계획 변경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종합계획 변경 및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과 종합계획 변경 결정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

⑤ 남해안청장은 남해안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5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부합할 것
2. 해안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관광·휴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3. 그 밖에 투자 활성화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면적, 투자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⑥ 남해안관광진흥지구에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공원법」 제9조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남해안청장은 남해안관광진흥지구가 제5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남해안관광진흥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7조(남해안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① 남해안관광진흥지구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시설의 종류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로 한다.

1.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제외한다)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② 남해안관광진흥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2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③ 남해안관광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남해안권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제558조(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란 해양·수산,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남해안의 강·섬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548조 및 제55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지구를 말한다.

② 남해안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남해안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지리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의 지정·해제는 제556조를 준용한다.

제559조(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 관계 법률 적용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5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제560조(통합특별시 유인도서 개발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를 글로벌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섬발전 촉진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내 유인도서를 개발 대상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62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변경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섬 발전 촉진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고시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개발의 목적

2. 지정섬 및 개발사업의 범위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개발 대상 섬으로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주민 소득 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 시설 정비

2. 산업 진흥 및 자립 개발 기반시설 확충

3. 교통 및 통신 접근성 확보와 물류 및 교통수단 개선

4. 풍수해 및 재해 대응을 위한 방재·방풍 시설 지원

5. 주택·상업 시설 등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 확충

6. 환경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생태계 유지 대책

7. 글로벌 해양관광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

8. 그 밖에 개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통합특별시장은 유인도서의 지정 및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포함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지정된 개발 대상 섬은 5년마다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561조(문화예술의 섬 지정 등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도서 지역에 문화예술의 섬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섬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문화예술의 섬에 입주한 기업이나 예술인에 대한 지원
3. 문화예술인의 특구 입주 지원
4. 문화예술과 신기술을 접목한 각종 사업 지원
5. 그 밖에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의 섬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562조(섬발전심의위원회 설치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섬 발전 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발 대상 섬 지정 기준
2. 사업계획 작성 지침 및 기준
3. 사업계획 승인 여부
4. 도서 지역 주민 복리 향상 및 글로벌 해양레저 도시 육성 방안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563조(개발 대상 섬 육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낙도, 인구소멸 위기 지역 등 지정된 지역의 섬 개발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4조(한국섬진흥원 분원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섬 발전 및 글로벌 국제해양레저도시 육성을 위하여 「섬 발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섬진흥원의 분원을 통합특별시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섬 개발 관련 기업·기관·단체의 유치를 위한 집적 단지와 교육 시설, 휴양 및 편의 시설, 주거 시설 등을 갖춘 지원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원 설치의 구체적인 요건(해당 지역의 인구 규모, 섬의 수, 해양레저 및 관광 전략, 지역발전계획과의 정합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565조(섬 주민 물류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관내 섬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해운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유류, 가스, 연탄 및 섬 주민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필수 생필품 등 생활물류의 해상운송비 지원
2. 택배 등 생활물류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 및 여객선·화물선 적재 화물의 운임 지원
3. 섬 지역 전용 공공 화물선의 건조·운영 및 물류 거점 센터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
4. 그 밖에 섬 주민의 기본적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66조(섬지역 특산물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섬 발전 촉진법」 제13조의2에 따른 섬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산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67조(도서·연안 관광개발을 위한 환경 규제 특례) ① 통합특별시

장은 섬 지역 및 연안의 고유한 생태·문화를 활용한 관광 개발을 위하여 친환경 관광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 내 개발 사업의 환경성 및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 이익의 일정 비율을 환경 복원 및 생태계 보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568조(섬 문화 보존 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섬의 고유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계승하고 이를 기반으로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섬 문화 보전 특구(이하 “섬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섬 특구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섬 고유의 민속문화, 무형유산 및 전통 생활방식의 기록화와 전승 지원
2. 섬 문화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섬 특화 관광 브랜드 육성
3.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 기반 조성
4. 섬 문화 전수관, 박물관 등 문화 기반 시설의 확충 및 운영 등

③ 통합특별시장은 섬 특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섬 특구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569조(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 관할 해역에 한하여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570조(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① 「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5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연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② 「연안관리법」 제5조제6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3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71조(동·남해안권 해양자원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해양 침적물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유인도서 및 그 주변 해역을 해양레저·경제 거점으로 지정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섬 발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개발 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이 제3항에 따라 섬 개발 대상지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의 목적과 필요성
2. 개발 범위 및 대상 지역의 지정 근거
3. 추진 일정 및 예산계획
4. 해양환경 보전, 재해 방지 및 생태계 회복 방안
5. 주민 복지 증진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
6. 해양레저관광·블루이코노미 연계 계획
7.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절차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사항

⑤ 국가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시행하는 해

양자원 활용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지원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이 조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수행하는 개발계획은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72조(해양치유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해양치유지구를 우선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을 할 때 해양치유산업의 광역적 연계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역이나 복수의 지역을 하나의 해양치유지구로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수의 지역이 하나의 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은 각 지역별 자원 특성을 고려한 기능 분담 및 연계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73조(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에 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이 해양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생태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른 생태공원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은 통합특별시장이 제출한 자료 및 관리계획을 통하여 충족된 것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공원을 지정하기 전에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관리계획, 재정 분담, 사후 보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74조(국가어항 지정 및 시행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이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어항의 신규 지정을 요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575조(지방어항 등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이 지정·관리하는 지방어항과 소규모어항에 대하여 국가 등이 계획하는 해양수산정책 등 연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상어항에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76조(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갯벌·해조류 등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사업과 해상풍력 등 해양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연계하여 그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금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정기적인 이익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바다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바다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위하여 발전사업자, 탄소흡수원 인증사업자, 주민 조합 등이 참여하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바다연금의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지급액 및 주민 참여 비율 등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577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 통합특별시장은 해양관광 및 수상레저산업의 체계적 진흥과 시민의 수상레저 활동 증진을 위하여 해양레저 관광 및 수상레저 활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관련 조례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 주체에게 예산 지원, 국유재산 사용 및 인력 파견 등을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안전, 환경 보호, 재난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별도의 시행규칙을 정하여야 하며, 해양 사고에 대비한 예방 체계 및 응급 조치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는 지역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자연생태자원의 합리적 활용

제1절 산림·자원 보전과 이용

제578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간의 행정통합으로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주민 중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범위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거나, 취수원 여건 및 수질 오염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579조(도립공원 지정 해제·축소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주민 의견 수렴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80조(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제2항(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③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2.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3. 산림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해제

4.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5.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등

⑤ 제4항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산림청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산림문화·휴양·복지·교육 관련 주요 계획 및 실행 상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1조(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자체적으로 국가 지정 수준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82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을 행사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와 산림 보호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림의 공

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국가의 산림 정책과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주민 참여형 산림복지 및 임업 진흥 정책을 추진한다.

제583조(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희소하거나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자원 등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채취·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 금지·이동 금지·장애물 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보존자원을 통합특별시에서 매매하거나 통합특별시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보존자원의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584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림 이용 진흥과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2. 대상지역의 산림자원과 경관이 산림이용진흥자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4.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5.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이용진흥사업에 관한 투자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지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진흥지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와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군·구는 진흥지구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587조에 따라 지정한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⑧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⑨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⑩ 진흥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585조(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전에 진흥지구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위치·면적
2.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및 교통 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하수도 및 전력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계획
6. 생태 및 경관 보전 계획과 환경오염 방지 계획
7. 안전 및 재해 대책과 구조·구급 계획
8. 진흥지구 밖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비용 부담 계획
9. 조성토지 등의 사용·공급·처분에 관한 사항
10.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1.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2.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 계획
13.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개발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86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① 산림이용진흥지구가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변경 및 결정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따라 고시일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친환경·첨단산업에 한정한다)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7조에 따른 매립 기본계획 변경
6.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 기본계획의 변경(지방하천으로 한정한다)
7.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 정비계획 변경
8.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변경

② 제1항 외의 지정·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87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자본금 등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진흥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 산림이용진흥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3.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주민 참여 가능성

4. 그 밖에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88조(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58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8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제589조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경영상 중대한 위기, 환경적 사유 등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에는 제587조를 준용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하여 지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및 관련 권리·의무에 관한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589조(산림이용진흥지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명칭·위치·면적
2.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 목적 및 방향
3. 토지의 확보 및 이용 계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5. 계획 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6. 단계별 조성 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환경 보전 계획, 재원 조달 계획 등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 신청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90조(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적용의 특례) ①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보전산지 행위 제한과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통합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완충구역에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산림청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승인·인가·허가 처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등산

로 또는 탐방로(쉼터, 생태교량 및 전망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정비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목원,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4.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의 건설

③ 「자연공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통합특별시 진흥지구 내의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관련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필요가 명백한 경우 진흥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3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에 필요한 시설

⑤ 제4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해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으로 한정한다.

제591조(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5조의2,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호, 제25조의3제1항 및 제5호, 제25조의5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본다.

②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제3호부터 제

5호까지, 같은 조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제11조제1항제4호,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같은 항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15호·제16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7호·제8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3조제4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22조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제25조의4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2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같은 항 제5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제30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3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42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3항, 제47조제5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통합특별시장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92조(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2. 「산지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3.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
4.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5.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편입된 산지일시사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주민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93조(산림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 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4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제58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단계별 조성 계획서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 이를 전부 또는 일부 완료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사업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산림이용진흥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

서를 교부하고 사업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 통합특별시장이 제169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통합특별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69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조성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제2절 환경 및 갯벌관리

제595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통합특별시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경우와 사업지역에 통합특별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지정·고시, 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그 밖에 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⑤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기관에는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

·고시하는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596조(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통합특별시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경우와 사업지역에 통합특별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지정·고시, 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그 밖에 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597조(특례의 존속기한) ① 제595조 및 제596조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595조 및 제596조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합특별시장은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8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595조 및 제596조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사업 등의 인·허가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허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자연경관영향 협의 등을 위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심의를 위하여 통합특별시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통합특별시장으로 본다.

제599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95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600조(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해양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해양 공간의 자치적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통합특별시를 갯벌생태관광의 거

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갯벌 등의 지역을 경남부산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경우

2. 갯벌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관리구역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제601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및 목적

2. 주요 갯벌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3. 지정대상구역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4. 어업권·광업권 등 이용현황

5. 법령상 규제지역 현황

③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남부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관리계획의 수립, 청정갯벌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사업
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갯벌 등의 생물다양성 보전조치
3.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4.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5.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진흥
6.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의 양성
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국제협력

제601조(통합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①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갯벌관리위원회(이하 "갯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갯벌관리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구역별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청정 갯벌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갯벌 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갯벌 생태관광의 진흥 및 인증에 관한 사항

6. 갯벌 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갯벌 생태 해설사 양성 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8. 연구 및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갯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업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④ 그 밖에 갯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602조(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갯벌 생태계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사업 중 국제 협약 이행, 세계 자연유산 등재 추진, 국가 환경 보전 계획 등과 연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03조(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하류로 유하 거리 1킬로미터 이내 및 상류로 유하 거리 4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공장의 요건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2호에 따른다.

제604조(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환경 및 생태 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원은 통합특별시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1. 「하수도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2.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비용 교부금

3.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 비용 교부금

4. 「물환경 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 비용 교부금

5.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 보전법」, 「물환경 보전법」 등 환경 관계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6. 통합특별시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절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제605조(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특별시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06조(취수원 다변화사업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607조(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사업의 추진과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낙동강 유역 주민에게 안전한 식수원을 제공하기 위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미리 취수예정지역(이하 “영향지역”이라 한다) 주민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취수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및 농작물 피해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체 관정 설치 및 손실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덕도신공항과 그 일원에 식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수장의 신축 및 증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608조(영향지역 정비사업) ① 영향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취수원 다변화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지역의 여건 변화를 고려한 영향지역 정비사업(이하 “지역정비사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영향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통합특별시장과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와 지역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시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9조(영향지역 지원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영향지역의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주민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한 영향지역의 지원사업(이하 "영향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향지역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영향지역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0조(영향지역 정비사업 재원) ① 지역정비사업의 재원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지역정비사업의 재원 조성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1조(영향지역 지원사업 재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09조에 의한 영향지역지원사업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수계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향지역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수계기금 등이 부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편 보칙

제612조(공공기관의 협조)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통합특별시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한다)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613조(감독) ① 통합특별시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거나, 공사를 중지하거나,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3.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14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직급, 담당 업무 및 종전의 직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직위 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 전직 지원 등 필요한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615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과태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권한이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된 경우 체납된 과태료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징수된 금액의 귀속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6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합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의 추진을 위하여 가칭 주민투표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양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등의 협의를 통하여 균형 있게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1. 주민투표 추진 방법 및 절차
2.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3. 그 외에 주민투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의회의장, 경상남도교육감,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조례·규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조례나 규칙은 경남부산통합특별시조례나 규칙이 각각 제정될 때까지 해당 조례나 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경상남도지사와 부산광역시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본다.

제4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 법에 따라 통합특별시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종전의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통합특별시가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진행 중인 소송상의 지위도 통합특별시가 당연히 승계한다.

② 통합특별시 설치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명의는 통합특별시의 명의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행정 통합에 따른 소관 공유재산은 일괄하여 등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등기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6조(소속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은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7조(공무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공무원으로의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용 조건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 및 해당 공고문에 따른다.

제8조(지방재정에 관한 경과조치) 폐지되는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예산 등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 관련 사항은 통합특별시가 설치되는 해에 속하는 회계연도 내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적용하던 사항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다만, 경상남도지사와 부산광역시장(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각각 경상남도교육감과 부산광역시교육감을 말한다)이 협의하여 이와 다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제9조(법정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서 수립·시행된 법정계획 및 이에 준하는 계획과 관할구역을 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도시, 교통, 복지 등 행정서비스는 통합특별시장이 새로운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10조(가덕도신공항운영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219조부터 제222조까지의 “가덕도신공항운영공사”는 공사 설립 전까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 따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으로 본다.

제11조(통합특별시 소방청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청장 및 차장이 임명될 때까지 기존 관할 지역의 소방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울산광역시의 통합 참여 절차 간소화 및 특례 승계)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부울경 초광역권의 완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와의 행정통합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향후 울산광역시가 통합특별시와 통합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통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와 울산광역시의 통합이 확정될 경우, 이 법에 규정된 통합특별시의 법적 지위와 조직·재정상의 모든 특례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통합된 울산광역시 지역에 포괄적으로 승계·적용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늘어난 행정 수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제69조와 관계 조항에 따른 특례의 확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